

주제 발표문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이 주 형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I.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의 의의 .....	1
II. 우리나라 양형실무의 문제점 .....	2
1. 우리나라 양형실무에 있어서의 일반적 문제점 .....	2
2. 전관예우의 문제 .....	2
3.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문제 .....	5
4. ‘관대한 형선고 경향’의 문제 .....	6
5.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의 기준 부재 .....	7
6.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문제 .....	8
7. 소결-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의 의의- .....	12
III. 형벌 및 양형기준제의 목적 .....	13
1. 형벌의 목적 .....	13
2.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목적 .....	13
가.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제거 .....	14
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양형기준의 정립 .....	15
다. 형벌의 확실성 및 엄정함의 보장 .....	16
IV. 양형기준제 추진 방식의 세계적인 추세 .....	17
1. 사법부에 의한 자체적인 규율 방식 .....	17
2. 양형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형기준 수립 방식 .....	18
3. 의회 입법을 통한 양형기준 수립 .....	19
4. 양형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양형개혁 노력 .....	19
V. 세계 각국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분석 .....	21
1. 착안점 .....	21
2. 평가방식으로서의 종합적 양형기준제 .....	21
3. 망라적·격자형 모델 .....	23
가. 개별 범죄수준이 하나의 양형기준표에서 비교가능한 망라적 형태 .....	23
나. 범죄수준과 전과를 양축으로 양형범주를 격자식으로 등급화 및 계량화 .....	23
다. 종합적인 양형기준제에 해당 .....	24

라. 등급조정식과 등급미조정식의 분류 .....	24
4. 개별적·격자형 모델 .....	25
5. 개별적·점수제 모델 .....	26
6. 개별적·서술형 모델 .....	27
7. 뉴질랜드식(개별적 서술형이면서 종합적인 형태) 모델 .....	30
8. 호주식(양형정보시스템 및 필수복역기간 설정) 모델 .....	31
9. 각 모델별 장·단점 분석 .....	32
가. 망라적·격자형 양형기준제 모델 .....	32
나. 개별적·격자형/점수제 모델 .....	33
다. 개별적·서술형 모델 .....	34
라. 뉴질랜드식(개별 서술적·종합형) 모델 .....	36
마. 호주식(양형정보시스템 및 필수복역기간 설정) 모델 .....	37
바. 소결 .....	38

## VI. 종합적 양형기준제(Comprehensive Guidelines System)의 필요성에

대한 외국 학자들 및 외국 양형 관련 기관의 견해 .....	38
1. John Halliday (영국 내무부 양형제도 연구팀장) .....	38
2. Justice for All (White Paper: 사법에 관한 백서) .....	39
3. Micheal Tonry (미네소타 주립대 교수) .....	41
4. Andrew Ashworth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 .....	42
5. New Zealand Law Commission의 권고 사항 .....	43
6. 소결 .....	44

## VII. 법률상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방식의 기본적 형태 .....

1.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 구비 .....	45
2. 합리적 양형도출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	45

## VIII. 양형인자 계량화 방안 .....

1. 양형인자 계량화의 의의 .....	46
2. 양형인자의 계량화 정도와 양형기준제 목적과의 상관관계 .....	46
3. 모델별 양형인자 계량화의 정도 .....	48

4. 망라적·결자형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 .....	50
5. 양형인자중 특히 “전과 계량화의”의 필요성 .....	53
<b>IX. 우리나라 양형기준 제정시 고려할 사항 .....</b>	<b>55</b>
1. 종합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필요 .....	55
2. 주요 범죄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기본적 범죄수준의 제시 ...	56
3. 구금/비구금 결정(in/out decision) 기준 제시의 필요성 .....	56
4. 작량감경의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 .....	56
5. 경합범 가중 방식의 명확한 기준 제시의 필요성 .....	58
6. 양형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치 확보 및 양형기준 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의 필요 .....	59
<b>X. 각 국 양형기준제 장·단점 비교·분석 체크리스트 .....</b>	<b>60</b>
<b>XI. 최초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의 범위 (종합적 양형기준제 vs 점진적 양형기준제) .....</b>	<b>62</b>
1. 종합적 양형기준제 vs 점진적 양형기준제 채택의 문제 .....	62
2. 구체적 방안 .....	63
<b>XII. 신속한 양형조사자료 분석의 필요성 .....</b>	<b>64</b>
<b>XIII . 결론 .....</b>	<b>64</b>
[별지1] 미국 연방 양형기준 .....	66
[별지2] 워싱턴 D.C. 양형기준표 .....	67
[별지3] 노스캐롤라이나 주 양형기준표(중죄) .....	68
[별지4] 영국 양형위원회에서 공표한 “강도죄 양형기준” 중 일부 발췌 ...	69
[별지5] 영국 치안판사 양형기준 중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	70
[별지6] Standard non-parole periods .....	71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연구

전문위원 이 주 형

## I.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의 의의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먼저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제1항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 동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고 규정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이라 함은 결국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양형기준제 방식"을 의미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안 "우리나라 양형실무상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 세계 각 국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제 방식의 종류와 적용방식 특색 등을 살펴보고 그 장·단점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양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양형기준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법관에게 제시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제(Comprehensive Guidelines System)가 절실히 필요함
  - 이때 종합적 양형기준제는 단지 다수 범죄를 망라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는 기준제를 말함

- 양형기준제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① 양형개혁의 목적 및 지도원리의 명확한 설정(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편차해소 등), ② 범죄 상호간의 범죄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기본 범죄수준의 도출 및 제시 ③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 ④ 구금과 비구금(실형과 집행유예 내지 벌금) 선고기준의 명확한 제시(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중간 제재적 성격의 부가조건 부과 기준과 취소 기준 명시도 필요) ⑤ 경합범 가중 방식 ⑥ 과거 및 현재의 양형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⑦ 양형기준 시행 후, 그 적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방안의 마련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입할 양형기준제가 격자 형태이든 아니면 서술 형태이든 간에 종합적인 양형기준제가 수립되어야만 우리나라의 양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양형기준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한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이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양형실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한 후, 세계 각국의 양형기준제 설정 방식에 관한 세계적인 경향과 그 장·단점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 양형기준제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방식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II. 우리나라 양형실무의 문제점

### 1. 우리나라 양형실무에 있어서의 일반적 문제점

-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실무에 있어서 일반인들로부터 가장 비판하는 부분은 '전관예우 및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존재', '집행유예의 남발', '온정주의적 관대한 형 선고 경향',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등임

※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7. 8. 10.자 이주형 전문위원의 보고서인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을 참조

### 2. 전관예우의 문제



-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임
- 재판에 있어서 전관예우라 함은, 이전에 판사로 근무하다가 개업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남아 있는 예전의 동료 판사가 전관변호사를 예우하여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는 관행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의 문제는 제1차 양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과거 확정 사건 양형자료 조사’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의 전관 여부를 조사 및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sup>1)</sup>
- 그러나 “전관예우”와 관련한 일부 통계 수치 및 다른 기관에서 행한 설문조사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그 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먼저 법률신문사에서 변호사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sup>2)</sup>에서
  - “전관 변호사 선임시 재판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7.3%의 변호사들이 “그렇다(23.0%가 ‘매우 그렇다’, 54.3%가 ‘다소 그렇다’)”고 답변
  - “영장 발부에 있어서 법원·판사간 편차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무려 변호사의 99%가 “편차를 느낀다”고 답변(11.7%가 ‘매우 심하다’, 28.3%가 ‘심하다’, 59.9%가 ‘다소 있다’고 답변)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위 변호사의 86%가 동의
- 서울신문<sup>3)</sup>에서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일반 변호사의 경우 심리불속행율이 40%인 반면, 대법관 출신의 경우 심리불속행 비율이 6.6%에 불과함을 시사한 바가 있으며
- 한겨레 신문<sup>4)</sup>에서 ‘향판의 문제점’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1) 양형위원회의 과거 확정 사건 7만건에 대한 양형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 양형요소를 정함에 있어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논의과정에서는 15명 중 한 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위원들이 ‘전관예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여, 전관예우를 분석 대상 인자로 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당시 제1차 양형위원회 임시회의의 논의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분석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전관예우’는 분석 대상 인자에서 제외되었음

2) 법률신문 2007. 12. 3.자 제1면, 제4면, 제5면

3) 서울신문 2007. 8. 8.자

4) 한겨레신문 2007. 8. 2.자 9면

-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개업한 뒤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형사항소심 판결문 305건에 대한 분석 결과 1심 선고형에 대하여 ‘사정변경없는 감형’을 받은 판결이 51%에 달한다고 보도
- 이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금 공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감형을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의 양형부당 파기율 35.8%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것임,
- 향판 출신 변호사 중 ‘사정변경없는 감형’의 비율이 무려 83%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 대전법원의 경우 향판 출신 모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냈(전관 수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피고인은 총 17명이었음)
-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국감에서 밝힌 김동철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sup>5)</sup>
  - 서울고법 포함 전국 24개 고·지법 특별재판부 배당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평균비율은 무려 48.4%인데, 광주지법 특별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율이 78.1%, 의정부지법 65.9%, 수원지방법원이 64.4%, 대구지방법원이 52.9%로 주로 지역법원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율이 높았다고 함
  - 또한 2005년 1심 형사 구공판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35.4%이나,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48.4%로 평균보다 13%가 더 높았음
- 이러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 위 법률신문의 설문조사에서는 “영장발부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서 “법관재량이 너무 많고(46%), 통일적 기준이 없기 때문(39.2%)”이라고 답변
  - 위 한겨레 신문에서는 ‘항소심에서의 감형 여부는 오로지 항소심 재판장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사회적 문제로서의 전관예우”

5) 이와 관련하여 “부스앤뉴스” 2006. 10. 19.자 신문에서는 “노회찬 ‘중앙은 경판이, 지역은 향판이 소송 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음

- 이러한 전관예우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충실한 양형자료의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른 방식으로 적절한 양형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로비를 통하여 형량을 줄이려 시도하게 만든다는 것임
    - 실제로 특별재판부가 일반재판부보다 집행유예를 더 많이 선고하는 등 관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함으로써 특별재판부로 재배당받는 경우도 많았음
  - 결국 이러한 전관예우는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법률외적인 로비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양형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를 조장하여 법과 절차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킴
  - 이러한 전관예우로 인해 이미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관예우가 장기화될 경우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속칭 “전관예우”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의 제정이 절실하다 할 것임

### 3.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문제

- 비록 동종·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편차를 확인한 것은 아니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의 재판부간에 집행유예 비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지역 법원의 경우 전관출신 변호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양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의 일관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 일반인의 73.9%가 일관성이 없다고 대답했고, 일관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9.9%에 불과
  - 전문가 집단에서도 63.3%가 일관성이 없다고 답변하였음(법관들 중 22.3%도 일관성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 2007년도 1/4분기 대구지방법원의 선고형 분석 결과 편차가 큰 합의부와 교통전담부를 뺀 단독재판부의 비교에서도 실형 선고율이 최고 41%와 최저

24.07%로 17%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sup>6)</sup>

-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교도소 내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었는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온건한 재판부로 재배당 받기 위해 노력함
- 불공정한 양형편차(unwarranted disparity)의 제거는 양형기준제를 창시한 미국 연방 및 각 주를 비롯하여 이를 도입한 전 세계의 목표임
  -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검사인 Thomas Zeno의 표현을 빌리면 “판사 개개인을 놓고 볼 때 각 판사는 나름대로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린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판사들을 모아놓으면 자신들의 관심사, 성향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편차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sup>7)</sup>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종·유사한 사건이 판사 개개인 내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필요

#### 4. '관대한 형선고 경향'의 문제

- 양형의 관대·엄정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양형위원회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의 72.5%(일반인은 59.2%)가 “관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엄격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단지 4.3%(일반인은 6.1%)에 불과
  - 직접 형을 선고하는 법관들도 64.4%가 형이 관대하다고 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법관이 32.6%, 엄격하다고 답한 법관은 단지 3%에 불과함
- 또한 양형위원회에서 실시한 양형자료조사에 대한 기초 분석결과를 보면
  - 강간유형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총 41.4%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강간상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65.6%, 강간치상의 경우 59.2%,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경우 52.1%, 성폭법(주거침입강간)의 경우 58.5%에 해당

6) 이주형,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2007. 8. 10.자 전문위원 보고서 참조

7) 대검찰청, 영·미 양형위원회 운용실태 보고, 72면, 180면

-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강도치상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42.1%, 강도상해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4.2%에 이룸
- 뇌물수수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71.1%, 벌금형이 4.4%로 단지 24.4%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뇌물액수가 많은 특가법(뇌물)도 38.1%가 집행유예, 4.8%가 벌금을 선고받았음
- 관대한 형 선고 경향의 원인
  - 관대한 형 선고 경향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통계수치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적인 통계들만 확인됨
  - 또한 판사들의 온정주의적 형 선고 경향도 있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방법, 죄질과 피해자가 겪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판결하기 보다는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 개인의 사정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관대한 형 선고 경향의 문제점
  - 관대한 형 선고 경향은 결국 심각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법절차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되고, 사법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됨
  - 결국 재판으로 가 봐야 그 과정에서 피해자만 더 피곤하고 힘들어질 뿐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해지면 피해자들은 법과 절차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법관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범죄자에 대한 확실하고 엄정한 형벌이 실현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하고 엄정한 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형기준제가 필요하다 할 것임

## 5. 실행과 집행유예 선고의 기준 부재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자에 의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도 법원은 42.1%에 이르

는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

- 실형과 집행유예의 형의 경중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 징역 10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경중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일반 국민의 70%(정확하게 69.4%)와 전문가의 90% 정도(정확하게 89.5%)가 징역 10월의 형이 더 무겁다고 답함
  - 그렇다면 동종·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피고인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어느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두 사람이 느끼는 양형편차는 엄청날 것임
- 이토록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은 이유는,
  -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능형량의 폭이 아주 넓음
  - 그런데 위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됨
  - 이러한 광범위한 집행유예 선고 권한이 전적으로 판사 개개인의 재량에 의존할 뿐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시비가 끊이지 않음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와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6.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문제

-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그 동안 속칭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여 기소(구속, 불구속기소)

한 기업범죄 117건을 상대로 법원의 선고형에 대한 분석을 하여본 결과 117건 중 집행유예가 107건, 벌금형이 4건이고, 실형은 6건에 불과함<sup>8)</sup>

- 중수부에서 수사한 기업범죄의 실형선고율은 겨우 5%로 불과한 것으로 기업범죄를 제외한 일반사건의 실형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형율임
- 결국 지금까지 기업총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선고형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2007. 6. 14.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개최한 “기업범죄 양형문제와 대안” 토론회의 발표자인 정미화 변호사가 세간의 이목을 끈 15개 대기업 사주들에 대한 형 선고 내용 분석결과(표1)를 보면<sup>9)</sup>,

**[표1] 15개 대기업 사주들에 대한 형 선고 내용**

기업총수	죄명	1심	2심	종국결과
한화 김승연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확정
한솔 조동만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항소포기	확정
쌍용 김석원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항소포기	확정
신동방 김명수	증권거래법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추징금 77억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추징금 동일	확정
부영 이증근	특경가법위반(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새한 이재관	특경가법위반 (사기, 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확정
한라 정몽원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한진 조양호	특경가법위반(횡령)	징역 4년 벌금 300억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확정

8) 내일신문, 2007. 6. 14.자 21면

9) 같은 신문 21면

해태 박건배	특경가법위반(사기)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진로 장진호	특경가법위반 (사기,배임,횡령)	징역 5년6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별건으로 동일형량 다시 선고	확정
고합 장치혁	특경가법위반(사기)	징역 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SK 최태원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심 진행중
동아 최원석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두산 박용성	특경가법위반(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1심과 동일	확정
현대 정몽구	특경가법위반 (횡령, 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심 징행중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건의 사건 중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9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5건으로 제1심의 실형율은 60%이었으나, 제2심에서는 실형을 유지한 사건이 단 1건도 없음(위 사건들에서 항소한 피고인들은 전부 실형을 면하였음)
- 2005년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파기율이 56%인데 반하여 위 기업총수들의 항소심 변경율은 11건 중 9건인 81.8%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음
- 기업총수들에 대한 확정형의 형량은 벌금 3천만원이 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1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3명,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8명, 기타 2명임(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진로 장진호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임)
- 위 정미화 변호사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한 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기업총수들에 대한 실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특유하거나 유리한 특정한 양형요소를 추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음



- 2006.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전국법원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114건에 대한 분석자료<sup>10)</sup>와 비교해 보면
  -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의 71.2%이고,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은 28.07%,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평균형기는 2.88년임
  - 그러나, 동종 범죄에 관한 상기 기업총수들의 구금형이 거의 없음<sup>11)</sup>
  - 일반인이라면 형기가 2.88년이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있음에 반하여 기업총수들은 3년의 선고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이를 다시 전체 범죄의 실형의 추측형기와 비교하면
  - 전체범죄의 실형 추측형기가 2002년 1.85년, 2003년 1.77년, 2004년 1.76년, 2005년 1.79년이므로 대략 2년이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일반범죄자들이 별도의 집행유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형을 살고 있음
  - 이에 반해 기업총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 내지 4년을 선고받고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상의 예우가 남다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정미화 변호사)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의 문제점
  - 이러한 기업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일변도의 판결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
  - 2007. 초 상장사 임직원들의 총 횡령액수는 2006년 297억원에 비해서 1,606억원으로 5.6배나 증가하였고, 상장사 임직원의 사건당 횡령액수도 37억원에서 76억원으로 2.1배 상승함<sup>12)</sup>
  - 결국 위와 같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횡령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건당 횡령액수가 커지는 것은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형 선고 경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10) 설민수 판사의 논문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 제16면 이하

11) 정미화 변호사는 최근의 선고형을 보면 위 정몽구 회장의 1심(불구속상태임)과 김우중 및 임창욱의 실형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소유주에 관한 의미있는 실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12) sbs “그것이 알고 싶다”-누가 회장님의 형을 가볍게 하는가“에서 제시된 통계 결과임

-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엔론사 사장 제프 스킨링에 대해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한 것처럼 엄정하게 형을 선고하였다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횡령·배임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었을 것임
- 결국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판결들은 전혀 범죄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솜방망이식 판결로 인해 위와 같은 범죄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처럼 대기업 사주에 대한 특별 예우를 하지 않고 엄정한 형 선고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 엄정한 양형기준"의 제정이 필요할 것임

#### 7. 소결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의 의의 -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의 의미는 우리나라 특유의 양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형기준제 방식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 양형의 불공정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관예우에 따른 양형의 왜곡, 판사별 또는 재판부별 양형편차의 존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으나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고, 집행유예의 남발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양형이 너무 관대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경향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것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어온 양형편차 등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는 이러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재판부간 및 법원간의 불공정한 양형편차”, “집행유예의 남발 등 전반적으로 관대한 양형의 문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의 분류 기준 부재”, “속칭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경향” 등의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III. 형벌 및 양형기준제의 목적

#### 1. 형벌의 목적

- 형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라 할 것임
- 현대에 와서 형벌의 목적은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치중하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형벌의 목적
  - ① 범죄의 경중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며, 범죄에 대한 공정한 형벌을 부과
  - ②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억제력(위하, deterrence)을 제공
  - ③ 피고인의 향후의 범죄들로부터 공중을 보호
  - ④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적, 직업적 훈련, 의료, 기타 교정적인 치료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 영국은 2003년 형사사법법 규정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 ① 범죄자의 처벌, ② 범죄의 감소, ③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 ④ 공공의 보호, ⑤ 범죄행위의 영향을 받은 자에 대한 범죄자의 보상을 규정함<sup>13)</sup>.
- 우리나라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형벌의 목적들에 맞는 양형정책과 실무절차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양형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해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양형기준의 정

13) U.S.C. Title 18, section 3553(a)(2)

립', '형벌의 확실성과 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임

#### 가.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제거

-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판사들에게 양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불공정한 편차를 제거하려는 것임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결국 그 동안 구체적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형을 정하도록 하던 관행을 시정하여 판사의 양형재량을 객관화하고 구체화하라는 입법자의 결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외국의 양형기준제 특히 미국의 경우 판사의 양형재량을 규제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양형재량의 구조화(structured sentencing discretion)’라고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법원조직법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형기준의 정립이 판사의 양형재량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듯한 주장은 개정 법원조직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음
- 따라서 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판사 개인의 철학 내지 성향이나 외부적인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가중·감경 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기존에 동종·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형선고가 다르게 이루어진 이유는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별로 양형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즉 재

판부 성향에 따라 어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으로 형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 또한 동종·유사한 사안에서 속칭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써 인해 실형이 선고될 사안에 대하여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으로 불공정한 양형편차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범죄수준을 분류하고 주요 양형요소의 존부에 따른 계량화된 가중·감경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양형기준의 정립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제1항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목적이, “국민들로 하여금 판사가 구체적 양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확인 내지 예측할 수 있도록 양형을 객관화 내지 투명화하여 양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내지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양형기준을 정립함에 있어 국민들이 구체적 양형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모호한 기준 설정은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명확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구체적 사건에서 판사가 특정한 양형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국민들도 양형기준을 따라 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 진다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형태의 양형기준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양형, 형벌 및 교정 실무들이 양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객관적 방식으로 적절하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공개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한 양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정형화된 서면에 그 이유를 작성토록 하고,
- 그 양형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양형위원회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통계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양형기준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 형벌의 확실성 및 엄정함의 보장

- 그간 우리나라 양형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뒤따랐음
- 이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마땅히 중형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나 벌금 등에 그치는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확실하지 못하고 엄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임
  - 객관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관예우'를 통한 양형의 왜곡, 판사들의 온정주의의 형 선고 경향 등에 근거한다고 보여짐
- 그러나, 형벌의 확실성과 엄정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혹자는 미국의 양형제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 미국 사법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유죄가 결정된 범죄인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엄격한 형 선고를 통한 형벌의 확실성 내지 엄정성이 자리잡았기 때문이고,
    -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자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지 예측가능하고 그 예측범위에서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최근에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로 확인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을 양형기준 정립시 고려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재범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재범 예측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치료감호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피해자와 사회 공동체에는 엄청난 피해와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아동대상 한 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재범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피해아동의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해아동이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어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며 오히려 피해자 가정이 이사를 선택하게 되는 등 가해자가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가 피해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가해자 가족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재판과정에서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거나 형을 감해주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임
- 이렇듯 전관예우 등에 따른 양형의 관대화 경향을 제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형의 확실성과 엄정성이 담보되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양형기준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 IV. 양형기준제 추진 방식의 세계적인 추세

##### 1. 사법부에 의한 자체적인 규율(Self Regulation by the Judiciary) 방식

- 사법부 자체에 의한 기준 마련에 주 안점을 두는 형식으로 영국에서 항소심 양형기준 판결을 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Tariff를 설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 양형의 영역은, 사법부의 고유 재량 내지 사법부의 독립 원칙에 기초한 준헌법적 영역이라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
- 영국에서는 양형위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양형판례법의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양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종전 치안판사 법원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의 형태로 공표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양형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제정하기도 함
- 종합적 양형기준제에서 구비하려고 하는 여러 요소(양형기준의 객관성, 예측가능성과 정형화된 범죄수준의 제시, 구금 비구금 기준,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다만, 사법부 자체에서 상급 법원의 양형지도를 통하여 일관성이 있는 판결을 유지하려는 입장
-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양형판례법 형태로서 종합적인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 법원조직법상의 양형위원회 규정과 배치된다고 할 것임

## 2. 양형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형기준 수립 방식

- 양형기준제가 처음 고안되어 시행된 미국의 각 주 및 연방을 비롯하여 영국을 제외하고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연방 국가인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여러 구비 요소들을 검토하였고(뉴질랜드 법률위원회의 양형개혁 보고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양형개혁 보고서), 뉴질랜드는 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의 형태가 서술적인 형태이건, 격자의 형태이건 간에 위 구비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전과를 포함한 양형인자의 계량화 정도, 격자 사용여부 등에 따라, ① 미국 연방과 같이 세밀한 계량화 방식(등급이동이 이루어지는 격자식), ② 대부분의 미국 각 주와 같이 다소 완화된 계량화 방식이 있고, 각 경우에 격자식 형태, 또는 서술식 형태로 기준을 나누기도 함
- 양형기준을 하나의 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미국 연방 및 상당수의 미국 각



주 양형기준), 또는 주요 범죄유형별로 각기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미국 버지니아 주, 위스콘신 주) 그 방식 자체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하나의 격자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별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인자를 달리 구성할 수 있고(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도 양형매뉴얼 제2장에서 각 범죄유형별로 양형인자를 별도로 구성), 계량화 되지 양형요소들을 판사가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형평성을 얻을 수도 있음
-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유형에 특유한 양형인자를 고려하기 용이하지만, 그 경우에도 각 양형기준에 공통되는 양형인자들이 존재

### 3. 의회 입법을 통한 양형기준 수립

- 독립적인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을 수립, 유지하지 않고, 의회가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입법하는 방식
  - 단지 법정형의 상, 하한을 입법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형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이나 내용을 입법화
  - 양형위원회 자체를 설립하지 않고 의회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양형위원회에 의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한 후 양형위원회만을 폐지하기도 함
- 미국 각 주의 예로는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루이지애나 주 등을 들 수 있고, 대륙법계 국가로는 스웨덴의 예를 들 수 있음
  - 사실, 미국 연방의 경우에도 법률로 양형기준 제정에 관한 중요한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의회의 입법에 의한 양형기준 수립은,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정기형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제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개혁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혁이라고 할 것임

### 4. 양형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양형개혁 노력

- 인터넷 시대에 양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유사한 사건의 양형정보를 판, 검사 및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피고인 내지 변호인은 기존에 선고된 유사한 사안의 양형정보를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조인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양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재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주, 그리고 스코트랜드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음
- 체계적인 양형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라 함은 단순한 판결문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사건에 대한 양형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양형에 이르게 된 주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형과정에 대한 비교, 검색이 가능한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이러한 양형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주체는 양형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이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양형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임
-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전 국민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객관적인 양형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일반인들에 의한 양형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예상되므로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 의한 자의적인 양형 선고 견제하는 기능으로 작동될 것임
-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양형정보의 수집, 공개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수적임
  - 영국 항소법원 법원 판사이던 Auld가 제출한 "Auld Review"에서도 양형정보의 공개의 중요성 강조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법부 자체에 의한 규율방식의 경우(영국식 양형기준제)에는 그 양형범주가 너무 넓고 구체적인 양형인자 적용방식이 법관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양형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양형정보의 제공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실질적인 양형개혁이 가능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양형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 준수 여부의 지속적 확인 및 양형기준의 수정, 보완을 위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양형정보의 수집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

## V. 세계 각국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분석

### 1. 착안점

- 위와 같은 양형기준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나라 양형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양형기준제 방식을 도입함이 상당
- 먼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도 특히 미국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 등의 특징과 장·단점 및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위 제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비판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외국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 내지 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제가 수립되었는가 여부는 외국 법률위원회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제의 평가항목들을 토대로 판단함이 상당함

### 2. 평가방식으로서의 종합적 양형기준제(Comprehensive Guidelines System)

- 종합적 양형기준제라 함은, 양형의 객관성, 일관성, 비례성, 예측가능성 등 양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구비한 양형기준제
- 양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로서는,
  - ① 양형개혁의 목적 및 지도원리의 명확한 설정(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편차해소 등) 여부,
  - ② 범죄 상호간의 범죄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기본 범죄수준이 도출 내지 제시되었는지 여부
  - ③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구금과 비구금(실형과 집행유예 내지 벌금) 선고기준의 명확한 제시(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중간 체재적 성격의 부가조건 부과 기준과 취소 기준 명시도 필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⑤ 경합범 가중 방식의 제시 가능 여부
  - ⑥ 과거 및 현재의 양형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 ⑦ 양형기준 시행 후, 그 적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임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미국 대부분의 주 내지 연방에서 채택한 격자식(Grid) 양형기준이 아니더라도 미국 버지니아 주, 미주리 주 등과 같이 범죄유형별로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두면서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구비한다면 종합적 양형기준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종합적 양형기준제를 단지 “모든 범죄 또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함
  - 종합적 기준제이나 아니냐는 단지 설정대상 범죄의 개수나 범위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오로지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종합적인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념을 변질시키는 것임
- 종합적 양형기준제의 대비되는 방식은 “부분적(Partial)” 또는 “단편적(Piecemeal) 양형기준제(Guidelines System)”임
  - 일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제정한 양형기준제를 ‘개별적 양형기준제’로 칭하면서 마치 종합적 양형기준제와 대칭되는 것처럼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 양형기준을 하나의 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미국 연방 및 상당수의 미국 각 주 양형기준), 또는 양형 요소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주요 범죄 유형별로 각기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미국 버지니아 주 등) 그 방식 자체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하나의 격자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별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인자를 달리 구성할 수 있고(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도 양형매뉴얼 제2장에서 각 범죄유형별로 양형인자를 별도로 구성), 계량화 되지 양형요소들을 판사가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형평성을 얻을 수도 있음
    -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유형에 특유한 양형인자를 고려하기 용이하지만, 그 경우에도 각 양형기준에 공통되는 양형인자들이 존재함

※ 각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방식도 위 구비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는 경우, 종합적 양형기준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반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식 양형기준의 경우에는 개별 범죄들 간에 범죄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종합적인 '구금과 비구금의 기준'도 제시할 수 없으며 양형기준의 준수여부의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양형기준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양형기준제가 될 수 없고 부분적인 양형기준제(Partial Guidelines System)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 3. 망라적·격자형 모델

#### 가. 개별 범죄수준이 하나의 양형기준표에서 비교가능한 망라적 형태

- 대부분의 범죄들에 대한 범죄수준이 정형화된 형태로 하나의 양형기준표상에 표시되고 그 범죄수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라적임
- 이때, '망라적'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인 것임
  - 즉, 종합적 양형기준제가 되기 위해서 모든 범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의 범죄들에 대하여는 비교가능할 정도로 범죄수준이 제시되어야 함
  - 이는 개별 범죄의 범죄수준을 하나의 양형기준표에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 양형기준제가 되기에 적합한 형태임
  - 따라서 미시건 주와 같이 범죄유형을 '대인 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 공공안정에 관한 범죄, 사회 질서에 관한 범죄, 공공의 신뢰에 관한 범죄'로 나누거나, 미주리 주처럼 '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비폭력, 마약, 약물운전'의 유형으로 나누거나 버지니아 주와 같이 15개 범죄유형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정하더라도 그 사회의 주요 범죄를 대부분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양형기준제가 될 수 있음

#### 나. 범죄수준과 전과를 양축으로 양형범주를 격자식으로 등급화 및 계량화

- 보통 Y축에는 범죄수준을 정하고, X축에는 실증적으로 양형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전과를 5-6 단계로 나누어 그 교차되는 부분의 셀(cell)을 일정한 범

위의 형량 선고가 가능한 범주로 구분하여 계량화·등급화

- 미국 연방과 같이 등급간 이동을 통한 조정방식을 취하는 경우와, 대부분의 미국 주와 같이 등급내 조정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음

※ 망라적인 형태이나 단지 성범죄와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테이블 (Sentencing Table)을 마련한 경우에는 망라적·격자식 형태라고 봄이 상당(미네소타주의 경우 중죄와 성범죄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중죄와 경죄로, 유타주는 성인범 일반 중죄, 성인범 성범죄, 소년범으로, 워싱턴주는 성인범 일반 중죄, 성인범 마약죄, 소년범으로, 워싱턴 디씨는 일반중죄와 마약류 범죄로 별개의 양형기준표 설정)

#### 다. 종합적인 양형기준제에 해당

- 전반적인 양형정책이 가능한 양형기준제
  - 교도소 수용인원의 예측이 가능하고, 투입한 비용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양형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됨
- 집행유예의 가능 구간(dispositional Line)의 명확화 가능
  - 하나의 양형기준표에서 여러 범죄들에 대한 통일적인 집행유예 가능 구간의 표시 및 부가조건 설정 기준의 표시가 가능
- 경합범에 대한 처벌기준 제시 가능
  - 미국 연방의 경우 범죄수준을 세분화하여 경합범 처리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였음
-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양형DB구축
  - 판사들로 하여금 정해진 양식에 양형 정보를 입력토록 한 후 이를 양형위원회로 인터넷 메일 내지 편지로 송부하게 하여 종합적, 지속적으로 양형DB를 구축
- 양형기준 준수상황의 상시적 모니터링(Monitoring)
  - 분석한 양형DB를 통하여 양형기준의 준수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양형기준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시스템

#### 라. 등급조정식과 등급미조정식의 분류

- 범죄등급을 범죄수준과 전과를 양측으로 하여 격자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범죄등급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주요 양형인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범죄등급을 상향하거나 낮추는 형태로 범죄등급간의 이동을 통하여 적절한 처벌범위(격자)를 찾아가는 형태가 등급조정식이고, 범죄등급을 넓게 설정하여 기본적으로 등급간의 이동없이 그 범죄등급의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하는 형태가 등급 미조정식 격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등급조정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가 있고, 등급미조정식으로는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형기준제로, 미국 미네소타주, 펜실베이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칸소주, 매사추세츠주, 유타주, 워싱턴주, 워싱턴 D.C. 등이 있음
- 등급조정식과 등급미조정식도 상대적인 개념임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급미조정식으로 볼 수 있으나, 미수의 경우 기수보다 한 등급 아래의 등급에서 결정되고, 중범은 정범보다 두 단계 아래의 등급에서 범죄수준이 결정됨에서 등급이 설정됨
  - 워싱턴디씨의 경우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2배까지 형을 가중하는 등의 실정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범죄 등급 범위내에서만 선고하는 것은 아님

#### 4. 개별적 · 격자형 모델

- 개별 범죄 유형별로 격자형의 양형기준표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양형기준표를 적용하는 망라적 · 격자형 모델과 구별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인범죄, 재산 범죄, 성폭력 범죄 등 일정한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개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양형기준표 내에서 정형화된 범죄수준이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범죄유형별로는 망라적 양형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범죄유형별로도 개개 범죄별로 기본 범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정형화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개 범죄의 구체적 형태 별로 따로 범죄수준을 제시하는

영국식의 개별적·서술형 양형기준과는 범죄수준의 제시 방식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

- 개별적·격자형 모델의 경우 적용방식은 망라적·격자형 모델과 유사하나, 범죄유형별로 별개의 격자식 양형테이블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범죄 유형을 큰 범주(Category)로 나누는 경우 수 개의 양형 테이블이 존재하나 이를 종합하면 망라적·격자식 형태와 유사해 짐
- **개별적 등급조정식 격자형 모델**
  - 개별적인 양형인자에 대하여 점수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범죄의 중대성’ 축의 등급조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미국 매릴랜드주와 미시건주의 양형기준제가 있을 수 있음
- **개별적 등급미조정식 격자형 모델**
  - 미주리주의 경우 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비폭력, 마약, 약물운전의 5가지 범죄유형의 양형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그 범죄등급 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개별적·점수제 모델

- 점수제 모델의 경우, 범죄수준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도출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임
  - 버지니아 주의 경우 15개 범죄에 대하여, 알리바마 주의 경우 26개 중죄를 대인, 재산, 약물범죄의 3종류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임
  - ※ 이 경우 비록 15개 범죄 유형과 26개 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정하였으나, 위 범죄가 위 버지니아와 알리바마 주의 대부분의 구금형이 선고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종합적 형태임
- 개별적·격자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범죄 유형별로 하나의 양형테이블을 활용하므로 범죄유형별로 종합적인 양형정책의 수립이나 구금/비구금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범죄 유형을 대부분의 범죄로 늘리는 경우 수 개의 양형테이블 또는 점수 부여방식이 존재하나 이를 종합하면 망라적·격자식 형태와 유사해 짐



## 6. 개별적·서술형 모델

- 이때 개별적이라고 함은, 위의 개별적·격자식과는 달리 최초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개별 범죄유형별로 종합적인 범죄수준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개 범죄 내지 개개 범죄에 있어서의 특정 태양에 대하여 각기 하나의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임
- 서술형이라고 함은 개개 범죄 내용 또는 특정 범죄의 행위태양과 그 범죄 수준 즉, 형 선고 가능범위와 출발점(Starting Point)을 서술적인(narrative) 형태로 설명하는 형태임
  - 범죄수준이 범죄의 중대성과 전과를 축으로 하여 양형테이블 내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 범죄별 내지 개개 범죄의 특정 유형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개별적·격자식과 차이가 있음
- **부분적(Partial) 내지 단편적(Piecemeal) 양형기준제**
  - 영국 Oxford 대학 교수로 양형분야의 저명한 교수인 Andrew Ashworth도 그의 저서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에서 “영국의 양형기준제는 정형화된 형태의 종합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개 범죄의 특정한 형태에 따라 단편적인(piecemeal) 양형기준을 제시할 뿐인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영국 양형기준은 법관 주도의 양형위원회가 가지는 한계에 때문에 개혁적(revolutionary)이지 못하고 진화론적(evolutionary)인 한계를 띠고 있고<sup>14)</sup>,
  - 영국의 양형기준제 형태(format of guidelines)에 대해 이제는 범죄와 범죄수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주요 범죄의 서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sup>15)</sup>
  - 이러한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실패는 미국에서 25년간 운용해 온 양형기준제의 교훈을 무시하였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양형기준 제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요 범죄의 범죄수준을 서열화하는 것이라는 것임<sup>16)</sup>
  - 영국의 양형시스템은 현재까지 단편적인(piecemeal)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14)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4면

15) Andrew Ashworth, 위 책 385면

16) Andrew Ashworth, 위 책 385면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일관성 있는 틀(framework)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sup>17)</sup>

- 이러한 영국 양형기준제 형태의 종합적(Comprehensive)이지 못하고 단편적인(Piecemeal) 형태의 문제점은 양형기준제에 관한 저명한 학자인 Micheal Tonry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고, 뉴질랜드 법률위원회의 “양형 및 가석방 개혁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sup>18)</sup>
- 이러한 개별적·서술형 모델은 영국식 양형기준이 대표적인 것으로,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점진적 형태임
- 이러한 개별적·서술형 형태는 영국식 외에 또 다른 모델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 위스콘신주의 양형기준이 개별적·서술식 모델이라고 주장에 대한 반론
  - 위스콘신 주의 경우도 범죄의 중대성을 Y축으로 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를 X축으로 하여 격자형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서술식 모델이라고 볼 수 없고, 개별적·격자식 모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미국 법률가 협회의 모델 형법전 양형편에서도 위스콘신주의 양형기준은 격자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sup>19)</sup>.
  - 전과, 직업 등을 고려한 3단계의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계량화가 이루어짐
    - 위 견해는 위스콘신주는 개별 양형인자를 계량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X축을 3단계의 격자형태로 범주를 나누어 위험성 평가를 통한 계량화를 하고 있음
    - 즉,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초범, 경범죄 전력, 중죄 전력, 동종범죄 전력, 재범 기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가석방 여부, 복역 중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교육 정도, 직업 보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후 낮음, 중간, 높음으로 구분하여 X축을 형성
  - 범죄의 중대성도 범죄 특성, 해악 정도, 감경, 중간, 가중으로 구분하여

17) Andrew Ashworth,, 위의 책 385면

18) New Zealand Law Commission, "Sentencing Guidelines and Parole Reform", 38면, 39면

19) The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 Sentencing, Tentative Draft No.1"(April 2007), pp. 173, 또한 Wisconsin Sentencing Commission, Wisconsin Sentencing Guidelines Notes, 2면에서도 Y축이 ‘범죄의 중대성’을 나타내고, X축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따른 장래 위협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Y축을 형성하여 그 교차점에서 형량범위를 9단계로 상세하게 정함.

- 따라서 위스콘신 양형기준은 점수계산식은 아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양형요소들을 평가해서 이를 X축에 3등분하고, 피고인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Y축에 3등분한 후 그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양형범위내에서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점수제와 유사한 격자형 양형기준이라고 할 것임<sup>20)</sup>

※ 위스콘신주의 종합적 양형기준의제

- 위스콘신주는 11개 범죄 즉, 1급 성폭행, 2급 성폭행, 1급 아동에 대한 성폭행, 2급 아동에 대한 성폭행, 무장강도, 강도, 주거침입절도, 절도, 코카인 판매, 마리화나 판매, 위조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
-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대부분(majority)의 범죄에 해당하는 11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제이고, 개개 범죄의 일부 유형에 대해 하나하나 기준을 정하는 점진적 형태의 영국식 양형기준제와는 구별됨
- 범죄수준을 정함에 있어 정형화된 범죄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범죄유형 중에서도 구체적인 범죄형태(예컨대 강도죄 중에서도 노상강도)를 3-4개 형태로 나누어(폭행, 협박의 정도, 흉기 사용 여부, 상해 발생의 정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서술된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수준(양형의 출발점과 형량가능 범위)를 정함
- 양형인자들은 가중요소 및 감경 요소로만 분류하여 나열만 할 뿐 가중치 부여방식을 전혀 정하지 않고 그 실제 적용 방식은 판사의 재량에 일임함
- 전과를 단지 하나의 양형요소로 취급할 뿐 별도의 객관적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계량화를 하지 않음
-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형태로는 영국식의 양형기준제가 유일하고, 양형위원회 구성 전 영국의 형사항소법원, 그 외에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의 형사항소법원 양형기준판결(양형 판례)과 유사한 형태임
- 영국은 2003년부터 양형위원회가 가동되었으나, 현재까지 강도죄 유형 중

20) 위스콘신주의 양형기준은 다른 미국 연방이나 주에 비해 상당히 정치하지 못한 것인데, 위스콘신은 양형기준 제정 당시 다른 주와 같이 양형의 편차가 심하거나 교도소 인구나 넘쳐나지 않았고 폭력적 피고인의 숫자도 많지 않았다고 함. <http://correctionssentencing.blogspot.com/2007/03/history-of-wisconsin-sentencing-part-vi.html> 참조

일부, 폭력범죄 중 일부, 상해치사, 성범죄 등 4개 범죄 유형 또는 그 중 일부만 기준이 존재

- ※ 영국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나, 성범죄 전반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하나의 범죄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33개 정도의 성범죄 태양별로 각기 별도의 범죄수준을 서술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7. 뉴질랜드식(개별적 서술형이면서 종합적인 형태) 모델

-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 유형별로 정하되 최초 양형기준(inaugural sentencing guidelines)을 정함에 있어 종합적인 양형정책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양형기준을 정하는 형태

※ 현재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도입을 결정한 상태임

- 뉴질랜드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서 미국 및 영국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분석 후, 영연방 국가로서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식 형태의 양형기준제를 받아들여, 대신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형태의 양형기준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임

- 종합적 양형정책 수립이 가능한 형태

- 먼저 영국과 같이 서술식의 개별적·점진적으로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1년에 1,2개씩 범죄 내지 범죄 유형의 일부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듦으로 인해 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불가능함을 비판
- 구체적으로는 범죄 전반에 대한 구금/비구금(실형과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교도소 수용인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범죄별로 양형기준을 만들되 구금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구금/비구금 기준과 교도소 수용인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형태를 추구함

- 양형인자의 계량화를 강화

- 영국식의 개별적·서술형 양형기준의 경우 양형범주와 양형의 출발점만을 제시하고 양형인자의 계량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형기준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이 되지 않음

- 개별 범죄유형의 양형인자를 어느 정도 계량화하여 판사들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되 양형기준의 목적, 일반원칙 등은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형태

○ 양형기준을 단순화하는 형태

- 영국식의 서술식 양형기준제의 경우 유사한 범죄유형에서도 그 유형별로 수 십개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개개의 기준을 마련하다 보면 양형기준이 너무 방대하게 됨
- 따라서 영국식의 서술식 양형기준 형태를 완화하여 좀 더 단순화되고 계량화된 형태의 양형기준을 제정기로 함

**8. 호주식(양형정보시스템 및 필수복역기간 설정) 모델**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 양형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형태임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양형의 일관성 증진을 위해 형이 선고되는 판결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양형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위 통계시스템을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피고인도 재판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형 선고 결과, 판결문 내에 실시된 양형인자의 가중, 감경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음<sup>21)</sup>
- 영국의 Auld경도 영국식의 개별적인 범죄유형화 형태의 양형기준의 경우 호주의 양형정보시스템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호주의 경우 별지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 필수 복역기간(Standard non-parole period: 표준 가석방 불가 기간)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표준 필수 복역 기간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1) 우리나라에 호주의 양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양형 및 판결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검토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됨으로써 양형의 일관성도 증진되고 국민의 참여 및 감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표준 필수 복역기간의 경우 24개 범죄에 대하여 이를 정함으로써 위 24개 범죄와 범죄의 중대성이 비슷하거나 범죄의 중대성을 비교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일정한 참조점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함

## 9. 각 모델별 장·단점 분석

### 가. 망라적·격자형 양형기준제 모델

#### ○ 장점(종합적 양형기준제에 해당)

- 양형기준의 구체성, 객관성 및 투명성 담보
- 일반인과 피고인도 선고될 형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
- 양형의 일관성(consistency) 확보 가능
- 교도소 수용인원 분석 등 종합적 양형정책 시행 가능
- 구금/비구금 내지 실행/집행유예(in/out decision) 기준 설정 용이
- 경합범 기준 설정이 용이

#### ○ 단점

- 양형의 계량화·획일화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 고려가 어렵다는 비판
- 지나치게 엄격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
- 양형기준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

#### ○ 의견

- 망라적·격자식 양형기준의 경우 모든 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 외에 개별 범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인자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특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그 양형요소를 판결내용에 상세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더 구체적 타당성있는 양형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은, 추정적(Presumptive) 효력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양형기준에 기속되는 형을 선고해야만 했을 당시의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에 대한 것으로서, Booker 판결 이후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가 권고적 효력으로 변경된 후의 비판으로는 부적절(우리나라

양형기준제는 기속적인 형태가 아니라 애초부터 권고적 형태)

- 망라적·종합적 양형기준 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기 쉬운 형태의 다른 양형기준제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망라적·종합적 양형기준제가 가지는 여러 장점, 특히 우리나라 양형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을 애초부터 포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음

## 나. 개별적·격자형/점수제 모델

### ○ 장점

- 개별 범죄 유형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구체성, 객관성 및 투명성 담보
- 개별 범죄유형의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개별 범죄유형별로는 양형의 일관성(consistency) 증진
- 개별 범죄에 있어서의 일관된 구금/비구금 내지 실형/집행유예(in/out decision) 기준 제시 가능
- ※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정책의 수립 및 구금/비구금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관된 경합범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망라적·종합적 모델에 대한 장·단점과 유사해 짐
- 범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 적용될 범죄 유형을 확대하는 경우 망라적·종합적인 형태와 유사해 짐

### ○ 단점

- 종합적인 구금/비구금 기준을 정하거나 종합적 양형정책 수립이 어려움
- 범죄 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너무 많아질 수 있음
- 범죄 유형간 양형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움
- 일관된 경합범 가중 기준 마련이 어려움

### ○ 의견

- 종합적·망라적 양형기준제가 가지는 객관성과 투명성 및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종합적·망라적 양형기준제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구체적 타당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음

- 범죄유형을 확대할 경우 종합적·망라적인 형태에 가까워지고, 매릴랜드주의 대인범죄, 약물범죄, 재산범죄의 3가지 범죄유형 또는 미주리주의 경우 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비폭력, 마약, 약물운전의 5가지 범죄유형으로 유형화의 폭을 넓히면 적용되는 양형테이블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음
- ※ 이 경우 영국식의 서술형 양형기준제는 범죄유형 중에서도 개개 범죄의 일정한 형태별로 정해지므로, 아무리 많은 양형기준을 만들어도 종합적인 양형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종합적·망라적인 형태에서도 마약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별개의 양형테이블을 마련하는 주장 있음
- 구체적 타당성과 객관·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망라적인 양형기준제 형태의 차선책으로 활용가능

#### 다. 개별적·서술형 모델

- 장점
  -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단점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 도입 취지에 반함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도입의 취지가 판사들의 무제한적인 양형재량 (sentencing discretion)을 제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양형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 개별적·서술형의 양형기준제는 구체적 범죄를 일정한 양형요소에 따라 3-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그 양형의 출발점과 양형범위를 제시해주는 기능 외에 특정한 양형에 이르는 객관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 일반인에게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음
  - 피고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사가 구체적 양형에 이르는 과정을 알 수 없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 도입취지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제1항)’이 어려움



- 양형편차의 해소 내지 양형의 일관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움
- 영국의 강도죄 양형기준의 경우와 같이 출발점을 4년으로 하고 양형범주는 2년에서 7년으로 함으로써 양형 범주가 너무 넓어 판사 입장에서는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가 거의 없고 양형이탈 사유를 실시할 가능성도 낮음
- 일반인이나 피고인에게 2년을 선고받은 경우와 7년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일반인은 양형편차를 더욱 크게 느낄 수도 있음
- 넓은 양형범주로 인해 양형 기준범위 내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과 하한에 있어서 5년의 차이가 남에도 양형이유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 양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 종합적 양형정책이 불가능하고, 구금/비구금(실형/집행유예) 기준 설정이 어려움
- 경합범 처리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개개 범죄의 유형별로 그에 따른 경합범 가중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임)
- 강도유형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노상강도의 경우와 주거침입 강도, 은행강도 등 강도의 유형에 따라 출발점과 양형범주가 별개로 정해져야 하므로 범죄 유형별로도 수없이 많은 양형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영국 성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33개의 개별 양형태양에다가 13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임

- 가중구성요건은 법정형을 일부 조정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

○ 의견

-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이 가장 많은 형태의 양형기준제임
- 이를 지지하는 입장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한 장점으로 들고 있으나,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구체적 타당성 내지 양형의 적정성 달성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없고, 따라서 자의적인 양형 판단인지 적절하게 고려된 양형판단인지 여부를 평가할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함

- 판사의 형량 선택 범위 등 판사의 양형재량이 너무 넓어 우리나라 특유의 양형문제인 '전관예우'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고, 법률과 제도의적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양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이 모델은 결국 법정형을 세분화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세분화된 범죄가 상당수 있음
  - 예컨대 뇌물죄의 경우에도 특가법(뇌물)의 경우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하일 때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3,000만원은 5년을, 4,000만원을 6년을 각 출발점으로 정하고 전과를 포함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나열한 후 판사로 하여금 2년6월과 7년6월 사이에서 형을 선고하라고 한다면 과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강간, 주거침입강간, 특수 절도강간, 특수강간 등 범죄유형에 따른 특별 가중규정이 있음
-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 중 하나인 '집행유예의 남발'과 관련하여 구금/비구금 설정기준이 철저히 필요한 바, 이러한 서술식 양형기준은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 내지 구금/비구금 설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없음
- 우리나라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 형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전과조차도 전혀 객관적인 가중치 부여없이 법관의 직관에 의해 가중, 감경토록 하는 경우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개별 범죄별로 경합범 가중 기준을 따로 만드는 경우 너무 방대한 양의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라. 뉴질랜드식(개별 서술적·종합형) 모델

- 현재 양형기준을 제정 중에 있으나, 뉴질랜드 법률위원회의 장,단점 분석

및 양형기준 제정에 관한 권고내용을 기초로 판단

○ 장점

- 징역형이 선고되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동시에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종합적 양형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고, 구금과 비구금의 기준의 마련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음
- 개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제정이 가능
- 영국식보다는 양형인자 계량화를 통해 양형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단점

- 범죄유형간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경합범에 대한 일관된 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 있음
-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만들다보면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됨

**마. 호주식(양형정보시스템 및 필수복역기간 설정) 모델**

○ 장점

- 양형통계를 활용한 양형정보의 공유
-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경우 양형통계 및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양형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영국식 양형기준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
- 24개 범죄에 대한 표준 필수복역기간(Standard Non-Parole Period)을 제시하여 비교가능한 범죄들에 대한 범죄수준 내지 양형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양형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 의해 부적절한 양형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 있음

○ 단점

- 구체적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양형기준제의 보조적 수단임

## 바. 소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적·서술적 형태의 양형기준제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양형기준제로서 채택할 가치가 거의 없는 기준제 방식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화되어 장점이 많은 종합적·망라적 형태의 양형기준제가 적절하다고 보여짐

## VI. 종합적 양형기준제(Comprehensive Guidelines System)의 필요성에 대한 외국 학자들 및 외국 양형 관련 기관의 견해

### 1. John Halliday(영국 내무부 양형제도 연구팀장)

- 먼저 영국의 내무부 양형제도 연구팀장이던 John Halliday는 양형개혁에 관한 그의 유명한 저서로서 소위 "Halliday Report"라 불리는 『Making Punishment Work - Report of A Review of the Sentencing Framework for England』에서 영국의 현재의 양형기준 형태를 비판하면서 양형기준 형태는 반드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그는 그의 저서 "Halliday Report" 제8장(Chapter 8) '입법과 양형기준 틀의 형태(The Shape of The Framework - Legislation and Guideline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 먼저 범죄수준의 등급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양형기준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바,
  - 그는 영국의 양형기준제 형태에 대하여 현존하는 양형기준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그 양형기준 정립 방식에서 발생하는 당면하고도 예측가능한 이슈를 언급하면서 『만약 이 보고서에서 권고되어진 변화들이 실행된다면 새로운 양형기준(new guidelines)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의 전과(previous convictions)가 형의 중대성(Severity of sentence)을 어떻게 증가시켰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양형기준이 범죄의 중대성(serious)에 의해 종합적인 범죄등급(comprehensive grading of

offences)을 나타내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이 경우 중대성에 의한 등급화는 동일한 범죄의 유형(category)에서와 다른 범죄유형과 어떻게 중복되는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 하였으며

- 또한 『위와 같은 등급화는 형량 고려를 위한 추정적인 출발점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은 충분히 또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범죄전력의 여러 다른 형태가 각각의 출발점에 끼친 효과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음<sup>22)</sup>

○ 그는 또한 법률에 의하여 양형기준의 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 『법률은 양형기준에 모든 주요한 범죄들에 대하여(covering all the main offences) 등급화된 범죄의 심각성 수준들을 나타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고 하였으며,

○ 범죄전력과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 『각각의 범죄수준에 관련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추정적인 출발점을 제시하고, 초범인 경우와 전과의 횟수와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수준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합범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립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고 하였고,

○ 양형기준의 준수여부와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는  
- 그리고 『법률은 양형기준을 생성하고 양형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음

## 2. Justice for All(White Paper: 사법에 관한 백서)

○ 2002년 영국 내무부에서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된 사법에 관한 백서인 Justice For All에서는 자신들의 양형기준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였음

○ 먼저 양형기준제 틀 내지 형태에 관하여서는  
- “최근, 양형자문위원회에서 항소법원에 체계화된 양형기준(formulated guidelines)을 사용할 것을 조언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약점을 가

22) Jonh Halliday, "Making Punishment Work - Report of A Review of the Sentencing Framework for England" 53면

지고 있다. 영국의 현재 양형기준은 종합적이지 못하고 한 곳에 명쾌하게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But present system has weakness. The guidelines are not comprehensive and they are not all set down clearly in one place)"라고 하여 영국의 양형기준이 종합적이지 못하고 하나로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약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 “우리는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고 형이 선고될 때에는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관성 있는 일련의 양형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We need to have a consistent set of guidelines that cover all offence and should be applied whenever a sentence is passed)"고 하여 종합적인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sup>23)</sup>

○ 그러나 위 백서에서는 위와 같은 종합적(Comprehensive)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적시하고도 다른 곳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양형기준 정립 절차는 이미 존재하는 항소심 양형기준의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sup>24)</sup>

○ 결국 위와 같이 종합적인 양형기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Halliday의 지적이 있었고, 위 백서에서도 종합적인 양형기준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도 실제 위 백서에서 채택한 양형기준 형태와 양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실제로 제정된 양형기준 형태는 영국 항소법원 양형기준판결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Halliday와 위 백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서 종합적인 양형기준제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Piecemeal) 형태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교수이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Micheal Tonry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음

-“먼저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판사 위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는 필연적으로 의미있는 양형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에 거의 항상 실패

23) Home Office, Justice For All 2002, 89면

24) 위 백서 90면

- 하게 된다”는 것으로, 영국 양형위원회는 양형위원 12명 중에 8명이 판사로 이루어진 판사 주도(judge-dominated)의 양형위원회라는 것이고<sup>25)</sup>,
- 이미 미국에서도 이러한 판사 주도의 양형위원회는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그러한 양형위원회에서는 의미있는 양형기준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판사위주의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매우 넓고 정확하지 않게 만들어 사법적 재량에 대한 의미있는 구속을 제공하지 않았다(Sentencing councils composed solely or mostly of judges have always failed in the U. S. in one of two ways: either they have been unable or unwilling to develop guidelines and have abandoned the effort, or they have developed guidelines so broad and imprecise that they offered no meaningful constraints to judicial discretion)는 것임<sup>26)</sup>,
  - 또한 “양형기준은 판사 위주의 양형위원회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Sentencing guidelines are to be whatever the judge-dominated council wants them to be)”는 것이고<sup>27)</sup>
  - 그리고 영국의 경우 정부가 사법부의 반대에 대항할 수 없었고,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았다(The government could not or would not confront judicial opposition)는 것임<sup>28)</sup>

### 3. Micheal Tonry(미네소타 주립대 교수)

-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로스쿨 교수로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범죄학 협회장 및 교수를 지낸 Micheal Tonry 교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 종합적 양형기준제(Comprehensive Guidelines System)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 양형기준

25) Micheal Tonry, Punishment and Politics, William Publishing(2004), 13면

26) Micheal Tonry, 위의 책 14면

27) Micheal Tonry, 위의 책 15면

28) Micheal Tonry, 위의 책 15면

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음

- 그는 그의 저서인 “Punishment and Politics”에서, “양형기준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것이 Halliday가 주장한 것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든 간에 채택된 양형기준이 종합적이지 않다면 획득될 가능성이 없다(Neither Halliday’s nor the government’s goals for sentencing guidelines can possibly be achieved unless the guidelines adopted are comprehensive)고 하였음<sup>29)</sup>
- Micheal Tonry의 기본적인 생각은 “종합적인 양형기준은, 예컨대 현존하는 항소심 양형기준 판결의 형태를 취하고 그 주위를 건축하는 것과 같이 단편적(Piecemeal)인 형태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총체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sup>30)</sup>
-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양형기준제가 작동할 수 없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는 종합적인 양형기준제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책의 상쇄 (Policy trade-off)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예컨대, 만약 성범죄에 대해 더욱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길 원한다면, 다른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sup>31)</sup>
- 또한 그는 “양형 시스템과 양형을 살펴보라, 종합적인 양형기준제를 고안하는 고유한 분야는 전체로서 하나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음

#### 4. Andrew Ashworth(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

- 이미 개별적·서술식 양형기준제의 설명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지내고 영국 양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Andrew Ashworth는 그의 저서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에서 영국의 양형기준제가 정형화된 형태의 종합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개 범죄의 특정한 형태에 따라 단편적인(piecemeal) 양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하여 종합적인(Comprehensive)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29) Micheal Tonry, 위의 책 16면

30) Micheal Tonry, 위의 책 16면

31) Micheal Tonry, 위의 책 16면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 그 부분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 영국은 법관 주도의 양형위원회의 한계 때문에 개혁적이지(revolutionary) 못하고 진화론적인(evolutionary) 형태의 한계를 띠고 있고,
  - 그 양형기준제 형태(format of guidelines)에 관해 이제는 범죄와 범죄수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주요 범죄의 서열화라는 것이며
  - 이러한 영국식 양형기준제가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이유는, 미국에서 25년간 운용해 온 양형기준제의 교훈을 무시하였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양형기준 제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요 범죄의 범죄수준을 서열화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 영국의 양형시스템은 현재까지 단편적인(piecemeal)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일관성 있는 틀/framework)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5. New Zealand Law Commission의 권고 사항

- 뉴질랜드에서 양형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된 법률위원회의 “양형 및 가석방에 대한 개혁 보고서(Sentencing Guidelines and Parole Reform)”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추구하는 양형기준제 형태는 “종합적인 최초 양형기준(Comprehensive inaugural guidelines)”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sup>32)</sup>
- 영국 양형기준제도에 대하여 New Zealand의 Law Commission의 보고서는,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양형기준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소 느리게 도입하는 접근방식을 취해 왔는데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양형기준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 무엇보다도 그러한 접근방식은 양형기준이 “교도소 수용자 수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의미있는 영향(a meaningful impact)을

32) New Zealand Law Commission, Sentencing Guidelines and Parole Reform,(2006. 8.) 38-39면

가질 정도의 충분한 양형기준의 범위를 갖추는 데에도(to achieve sufficient guideline coverage)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임

-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우선, 종합적인 형태의 최초 양형기준(inaugural guidelines)을 초안(draft)할 수 있도록 응집적이고(concentrated), 수감인원-집중적인(resource-intensive) 노력을 권고하였음<sup>33)</sup>
- 또한 위 법률위원회는, “최초 양형기준들이 발효되기 이전에 종합적인 최초 양형기준들을 기초하여야 한다”면서,
- “최초 양형기준은 법원에 통상적으로 판결하는 구금형 가능 범죄로서 그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로 구금형을 선고받는 범죄를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최초에는 일관성과 비용-효율적 양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가장 큰 범죄들에 우선성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권고하였음

## 6. 소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제는 반드시 종합적(Comprehensive)이어야 한다는 것이 양형기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은 이미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과 세계 각국의 법률 관련 위원회에서도 수긍하고 있는 원칙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종합적 양형기준제의 요소로는 ‘① 양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구체적 담보, ② 범죄 상호간의 범죄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기본 범죄수준의 도출 및 제시 ③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 ④ 구금과 비구금(실형과 집행유예 내지 벌금) 선고기준의 명확한 제시(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중간 제재적 성격의 부가조건 부과 기준과 취소 기준 명시도 필요) ⑤ 경합범 가중 방식 ⑥ 과거 및 현재의 양형 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⑦ 양형기준 시행 후, 그 적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방안의 마련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양형기준이 미치는 범위”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 대하여

---

33) 위 보고서, 39면

논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양형기준 형태인 종합적(Comprehensive)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느냐, 아니면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단편적(Piecemeal)인 형태의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는지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정말 양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임

## VII. 법률상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방식의 기본적 형태

### 1.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 구비

- 일반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판사가 양형절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고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에서도 양형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 양형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양형기준을 공개함에 있어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형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따라가면 판사가 도달한 양형과정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임

### 2. 합리적 양형도출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 이 원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에서는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고 규정
- 따라서 일정 범주의 행위 유형에 따라 형 선고 범위를 세분화한 정도에 불과한 영국식 양형기준제(개별적 범죄유형화 기준)는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임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

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양형위원회에서 법관들에게 “양형요소가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양형인자에 따른 적절한 가중, 감경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만 가능할 것임

## VIII. 양형인자 계량화 방안

### 1. 양형인자 계량화의 의의

- 모든 양형기준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범죄에 대해 선고 가능한 기본적인 형량의 범위(기본범죄수준)를 정하고 일정한 양형인자의 존부에 따라 기본 범죄수준에서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계량화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임
- 즉 어느 정도 계량화된 양형인자는 모든 양형기준제에 근본적으로 내제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까지 계량화를 할 것인가, 즉 계량화 정도의 문제임

### 2. 양형인자의 계량화 정도와 양형기준제 목적과의 상관관계

- 양형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과의 상관관계
  - 양형인자의 계량화 문제는, 계량화를 하면 할수록 양형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지는 반면, 양형인자에 대해 계량화를 하지 않을수록 양형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뉴질랜드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서도 “개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양형의 형태과 범위에 대하여 판사에게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수치적인 요소이다”라고 하여 판사에게 명확한 양형지침을 주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계량화 요소가 필요불가결함을 밝힌바 있음
- 양형의 일관성 증대와의 상관관계

- 또한 양형인자에 대한 계량화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양형의 일관성이 증대되나, 양형인자에 대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양형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판사의 양형재량과의 상관관계

- 양형인자에 대한 계량화가 증가할수록 판사의 양형재량은 점점 줄어들고 주관적인 판단여지가 줄어드는 반면 양형인자에 대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판사는 더 넓은 양형재량을 유지하고 주관적인 판단여지가 늘어나게 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 양형인자의 계량화와 구체적 타당성과의 상관관계 문제

- 양형인자에 대한 계량화가 증가할수록 판사의 양형재량은 점점 줄어들어 기계적인 양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고, 양형인자에 대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양형인자를 계량화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처럼 판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인들은 객관적으로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음
- 구체적 타당성과 자의적 판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체적 타당성은 주관적 판단과 구분하기 어려움
- 뉴질랜드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양형기준 및 가석방 개혁 보고서 (Sentencing Guidelines and Parole Reform)’ 경우 양형기준의 준수정도에 관하여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양형기준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탈할 수 없으며 ‘정의 실현 (interest of Justice)’은 양형의 이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권고<sup>34)</sup>하였음

※ 위와 같이 “정의의 측면(interest of justice)”에서의 양형이탈은 일부 판사들이 주장으로, 양형기준을 희생하여 개별적인 재량권 행사에 관해 너무 많은 강조점을

34) New Zealand Law Commission, "Sentencing Guidelines and Parole Reform" 43쪽.

두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됨

-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많을수록 양형의 객관성 및 투명성과 양형의 일관성은 확보할 수 없음
- 오히려 실증적으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양형인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고려하지 못한 양형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양형을 이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3. 모델별 양형인자 계량화의 정도

- 먼저 양형인자의 계량화와 관련하여 선고가능한 형량 범위(범죄등급)를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법정형에 가까워지거나 법정형을 좀 더 세분화하는 형태(영국식)가 될 수 있고, 그 형량 범위를 아주 좁게 잡고 세분화하면 모든 주요 양형인자의 존부에 따른 등급조정이 가능한 형태(미국 연방식)가 될 수 있음

#### ○ 망라적·격자식 양형기준 모델

- 미국 연방식 양형기준은 범죄수준(등급)을 세분화하고 범죄전력과의 교차점에서 정해진 격자(Cell)를 아주 조밀하게 배치
-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주요 양형인자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계량화하고, 그 주요 양형인자의 존부에 따라 범죄등급을 상향 내지 하향하여 구체적으로 선고 가능한 범죄등급 격자(Cell)에 도달하는 형태임
- 양형기준을 이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재량범위는 양형인자의 가중, 감경을 통해 도달한 구체적인 격자의 범위 내로 한정됨

#### ○ 개별적·서술식 양형기준 모델

- 이에 반하여 영국식의 개별적·서술식 모델에서는 노상강도죄의 경우 흉기 사용여부와 상해발생 여부에 따라 0~3년, 2~7년, 7~12년을 형량범위로 부여하고 출발점을 각 1년, 4년, 8년으로 부여
- 위 2년~7년이 형량범위인 경우 판사는 5년의 양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양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하게 됨

※ 구체적 내용은 별지4 영국양형위원회 노상강도 양형기준 참조

- 판사는 위 각각의 형량범위 내에서 가중요소 및 감경 요소를 고려하면 되고 가중, 감경인자의 고려 정도도 판사의 판단에 일임함
- 미국 연방 및 각주 양형위원회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인 전과도 단지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뿐,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거나 가중치를 두지 않음

※ 이러한 전과계량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아래 개별적·종합적(격자식) 양형기준 제와는 엄격하게 구별됨

- 계량화의 정도가 가장 미비함

○ 개별적·격자식/점수제 양형기준 모델

- 기본적으로 5개 내지 15개 정도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
- 미국 연방과 같이 격자식 양형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와 버지니아 주와 같이 작업지(work sheet)를 작성하여 각 주요 양형요소별로 채점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 양형범위를 찾아들어가는 방식이 있음
- 전과를 비롯한 주요 양형요소에 대한 계량화를 통한 점수부여 방식이라는 점에서 계량화의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임

○ 소결

- 위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느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양형기준제를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양형편차를 줄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고,
- 또한 우리나라 양형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임
-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로 공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양형기준제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인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현상'과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엄정한 형의 선고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망라적·격자형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가장 바람직함

#### 4. 망라적·격자형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

- 외국의 양형인자 계량화 방식은 형종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우리 형법과 배치된다는 주장
  -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양형기준제 형태로서 벌금형 영역과 징역형 영역이 연속되는 형태의 양형기준 구조와 양형인자에 대한 점수 부여 방식의 경우에 형의 가중, 감경 결과 형종이 선택되는 경우를 주장하고 있으나,
  -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징역과 벌금이 연속되는 형태의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점수제도 징역형만 적용하는 형태를 설정 가능함
- 형의 감경과정에서의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선택의 문제
  - 미국의 경우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상한이 없으므로 무기징역부터 형의 감경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징역부터의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 기본적으로 유기징역에서의 감경 방식을 정하고, 무기징역에서 일정한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기징역으로 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하여 감경방식 및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1회만 작량감경을 해야 한다거나 작량감경의 하한을 넘은 문제에 대하여
  - 작량감경의 경우 하한의 2분의 1까지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경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도 단 한 번만 감경할 수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임(감경의 정도의 문제임)
  - 계량화된 작량감경 사유가 많아 하한 아래까지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하한의 범위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것임(이는 미국 연방에서 형을 가중하더라도 법에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임)
  - 양형의 균등성도 법에 정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임
  - 등급조정을 통한 감경의 경우 미국 연방식으로 세밀하게 범죄등급을 구분하고 일정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일률적인 등급조정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님



- 법원조직법 제87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제1항에서는
  -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종 선택에 관하여도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전과를 계량화한 격자식 양형기준의 경우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 미국의 양형기준제는 대부분 전과를 계량화한 격자식이고, 아직까지 연방 또는 주 대법원에서 책임원칙과의 충돌을 이유로 위헌여부를 문제삼은 바 없음
  -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누범가중을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일정한 범죄전력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음
  - 우리 형법상의 누범가중의 근거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의되나, 누범은 이전범행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범행에 대한 형벌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저촉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임<sup>35)</sup>
  - 누범가중은 전판결에서 부여된 금지의 충격을 강화된 범죄에너지에 의해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책임이 가중된 것이라는 것이 통설<sup>36)</sup>이고, 행위책임에 의해 객관화된 행위자책임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sup>37)</sup>도 있음
  - 또한 누범 폐지론은 초범을 가볍게 처벌하고 누범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국제적인 형사정책적 경향에도 배치되고, 특별예방의 관점에서도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sup>38)</sup>도 있음
  - 영미식의 양형기준제는 공리주의적 바탕에서 발달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개념법학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 모델 양형법의 특정한 가중적, 감경적 양형인자의 계량화 금지 주장 관련
  - 모델형법전 양형편 6B.04(4)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의 권한보다는 사법부

35) 김일수,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2000. 9. 5.) 750면

36)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7. 8. 10.) 581면

37) 김일수, 전게서, 751면

38) 이재상, 전게서, 582면

- 재량이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양형위원회에서 특정한 가중적, 감경적 양형 인자를 계량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위 모델형법전의 규정은 모든 양형과정에서가 아니라 ‘개별 범죄에서의 결정에 있어서(over sentencing decisions in individual cases)’ 양형이탈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 사법부의 재량이 양형위원회보다 더 큰 통제력을 갖는다는 의미임<sup>39)</sup>
  - 또한 위 규정은 추정적(Presumptive) 양형기준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중적, 감경적 양형인자의 계량화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형의 이탈(Departure)의 경우에 한정하여 언급한 것임<sup>40)</sup>
    - 즉 위 모델형법전 6B.04(4)의 전문에 추정적 양형기준제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개개 범죄에서 추정적 양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목록을 제한없이(nonexclusive)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후문에 ‘양형위원회는 특정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에 대해 주어진 효과를 계량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것이고,
    - 위 규정에 대한 주석을 보면, 위 조항은 “특정한 이탈 인자(specific departure factors)에 주어지는 효과를 계량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 오히려 “양형기준에 있어서 추정적 형벌은 때때로 반드시 계량적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Presumptive penalties in guidelines must often be given quantative expression), 그러나 개정 모델 형법은 주관적이거나 사전에(in advance) 예측할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개개 범죄에 특유한 양형인자에 대해서 양형의 개별화가 종종 필요하다는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sup>41)</sup>
  - 따라서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정적 양형기준제하에서도 계량화된 표현이 필요하나, 양형이탈의 사유가 되는 인자를 일정한 양형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지 말라는 뜻이고, 그 이유는 주관적이거나 사전에 예

39) The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Sentencing, Tentative Draft No. 1(April 9, 2007) 194면

40) 위 모델 양형법 201면 이하

41) 위 모델 양형법 203면

측불가능한 인자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임

- 오히려 6B.04(3)(a)에 의하면 구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은 형기의 범위 또는 형기의 장단을 특정해야 하는데 범죄유형별로 비례성의 근거에 대한 의미있는 구별을 나타내고, 선고형의 합리적 통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형의 등급 구간을 충분히 좁게(narrow)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42)</sup>
  - 만약 하나의 양형 범주의 중간지점(midpoint)가 x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높은 단계는 1.15x를 넘지 못하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는 최소한 0.85x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sup>43)</sup>
  - 이렇게 범죄등급을 좁게 잡는 것은 그만큼 등급구간이 좁은 양형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양형위원회에 명백히 전달한다고 함<sup>44)</sup>
- 또한 위 규정은 추정적 양형기준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권고적 양형기준 제하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sup>45)</sup>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권고적 양형기준제하에서 그 당위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 결론적으로 양형이탈에 있어서 고려할 양형인자를 제한하여 그 효과를 계량화 하지 말라는 의미를 모든 양형인자를 계량화하지 말라고 권고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임

## 5. 양형인자 중 특히 “전과 계량화”의 필요성

- 미국 연방 및 각 주의 양형기준 제정 과정에서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전력인 사실은 실증적 분석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미국 연방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전과를 범죄 수준 결정의 양대 축의 하나로 삼고 있고 범죄전력의 증가에 따라 선고가능한 양형의 범위도 가중된 범주(category)로 올라감
- 결국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

42) 위 모델 양형법 192면

43) 위 모델 양형법 198면

27) 위 모델 양형법 198면

45) 위 모델 양형법 205면

전력에 따른 형의 가중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관계는 미국 연방 내지 각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의 종합적이고, 계량화된 형태의 양형기준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이에 반하여 영국 양형기준제도에서 전과는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인자의 하나에 불과하고,
  - 범죄 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고 오로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음
- 따라서 영국식 양형기준제도가 가장 비판받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객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양형요소에 대하여도 그 가중치 고려 방식이 전무하여 양형에 대한 일반인 및 피고인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임
- “전과에 따른 범죄수준의 증가에 대하여 영국의 양형개혁을 주도한 **John Halliday**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영국식의 양형기준제 형태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각각의 범죄수준에 관련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추정적인 출발점을 제시하고, 초범인 경우와 전과의 횟수와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수준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우리나라 형법(피고인의 성행) 및 법원조직법상(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7호)으로도 양형을 함에 있어 전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누범 가중 규정과 집행유예결격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결국 범죄전력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것을 입법적 전제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전력의 증가에 따른 범죄수준의 객관적 가중 방안 내지 범죄 수준의 상향 방안이 정해져야 할 것임
- 전과를 한 축으로 한 격자식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 격자식 양형기준제의 경우 대부분 전과를 한 축으로 하여 전과를 과도하게 계량화하여 형을 더 가중하고 경직되게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는 미국 연방과 같이 범죄수준을 상승시킴에 있어 상한이 하한의 6개월

- 또는 2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25퍼센트 룰'이 적용되는 경우와 범죄경력에 따른 범죄수준의 가중 정도가 큰 경우에는 가능한 주장임
- 그러나 범죄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수준만을 Y축에 설정해 놓는 경우, 특히 미국 각 주 형태와 같이 그 구간을 10여개 정도로 나누는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가중으로 인해 X축에 따라 범죄전력을 점차적으로 가중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 가중 수준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즉, 다양한 전과로 인해 범죄수준을 가중하더라도 바로 한 등급을 상향시킨 범죄수준으로 도약하거나(등급조정식의 경우), 기본 등급의 일정 범위(누범의 경우 2배)까지 상한을 가중하는 형태로 전과가 작용할 가능성(등급 미조정식의 경우)이 있음
  - 이에 비하여 전과를 X축으로 펼쳐 놓을 경우에는 범죄경력 점수에 따른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바로 윗등급의 범죄수준으로 진행하기보다 매우 점진적인 형태로 상한과 하한을 가중함으로써 전과의 고려를 더욱 유연하게 할 수도 있음(별지 2 워싱턴D.C. 양형기준표 및 별지 3 노스캐롤라니아 주의 범죄전력에 따른 범죄수준의 변화를 보면, 범죄전력에 따른 가중치가 3단계 내지 4단계에 이르러서야 바로 윗단계의 범죄수준과 유사한 형태가 됨)
  - 따라서 범죄경력의 상향에 따른 범죄수준의 급격한 증가를 양형기준표 제정의 원리로 삼지 않는다면 모든 범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범죄전력을 X축으로 삼아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 내지 양형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음

## IX. 우리나라 양형기준 제정시 고려할 사항

### 1. 종합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필요

- 세계 각국의 양형기준제에 대한 검토에서 보았듯이 양형기준제도가 성공적

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먼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과 법관이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성과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양형문제인 ‘전관예우의 문제’, ‘실형과 집행유예의 명확한 기준 부재’, ‘온정주의적인 관대한 양형’,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특히 관대한 양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범죄 상호간의 범죄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범죄들에 대한 기본 범죄수준의 도출 및 제시가 필요하고, 주요 양형인자를 계량화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방식을 명확히 하며 구금과 비구금(실형과 집행유예 내지 벌금) 선고기준을 명확한 제시하고, 적절한 경합범 가중방식을 정하여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양형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양형기준의 적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 주요 범죄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기본적 범죄수준의 제시

- 종합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요 범죄들에 대하여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기본적 범죄수준을 도출해 내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임
- 기본범죄수준의 스펙트럼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양형정책의 시행이 가능하고, 구금과 비구금의 종합적인 한계를 적절히 제시할 수 있으며 경합범 기준의 제시도 가능함

## 3. 구금/비구금 결정(in/out decision) 기준 제시의 필요성

- 세계 양형기준제의 공통적인 관심사
  - 세계 최초로 양형기준을 제정한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도 양형기준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구금과 비구금 결정(in-out decision)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구금 비구금의 경계선에 대한 관심은 일반 국민이나 범죄자들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임
- 교도소 수용인원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

#### 4. 작량감경의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

-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인 형법상의 작량감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명백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 우리나라 형법상 작량감경 제도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뉘우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형기 하한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형사실체법에서 가중처벌을 위하여 형기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정하여 놓은 경우에도 집행 유예의 선고가 가능함
- 이러한 작량감경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 작량감경 규정은 법관이 피고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권위주의적 산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이 정한 형벌범위를 법관의 재량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하여 형법의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함
- 형법 제53조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개괄적인 개념에 의한 감경에 따른 형벌은 책임의 한계를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미 책임형벌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 형법이 경합범에 대하여 병과주의가 아닌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처단형이 너무 높아질 염려가 많지 않고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한 문제점은 입법에 의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고 작량 감경에 의해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폐지론이 주장되고 있음<sup>46)</sup>.
- 이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라는 일반조항은 양형에서 법관의 주관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개입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량

46) 이천현, 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세기 형벌과 양형,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 12. 4.), 오영근, 형법총론 2005, 775쪽; 배중대, 형법총론, 2004, 659쪽 이하, 김영환/최석윤,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오영근/최석윤,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46쪽 이하; 최석윤, '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29호, 1997) 303쪽 이하 등

감경 규정에 대한 비판점이 되고 있음

- 작량감경 규정은 양형기준제도의 도입과 상충되므로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러한 작량감경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량감경 제도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양형인자별로 작량감경이 가능한 기준을 어느 정도 계량화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양형기준의 제정은 어려워 보임
- 결국 망라적·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작량감경의 경우 일정하게 등급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가중치가 부여되는 형태가 되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5. 경합범 가중 방식의 명확한 기준 제시의 필요성

-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체계와 영·미식 법률체계의 차이점 중의 하나가 경합범 가중의 방식의 차이임
- 영미의 경우 형의 누적적(consecutive)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을 동시에(concurrent) 집행함
- 따라서 영미의 경우 개개의 소인(count)별로 형을 정하고, 그 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함
- 이러한 경합범 가중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음
  - 범죄 유형별로 경합범 가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일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 수준별로 가감할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개별적 양형기준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경합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범죄 유형별로 경합범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영국의 양형기준제도는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합범일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경합범일 경우에는 개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
- 우리나라 구공판 사건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인바,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그 형을 어떤 형태로 가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것임
- 결국 망라적·종합적이고 충분히 계량화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6. 양형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치 확보 및 양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의 필요

- 양형기준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제정되어야 하고, 형의 선고는 기본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를 것이 요구됨
- 이미 제정된 기준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만약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계속적으로 양형기준을 보완·수정해 나가야만 할 것임
- 미국 연방, 각 주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양형기준의 효력이 추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권고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sup>47)</sup>
-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는 완전히 다름
- 미국 연방 또는 대부분의 각 주에서는 모든 판사의 양형판결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우편 또는 웹방식으로 양형관련인자를 체크한 문서를 양형위원회로 송부받음
- 이에 반하여 영국의 경우 판사가 고려한 양형인자 등을 체크하여 양형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양형인자를 어느 정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통계자료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형인자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함

47) 우리나라 개정 법원조직법에서도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실시토록 하여 어느 정도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 양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규범력을 향상시키고 수정 보완을 검토하기 위해, 양형 실무에 대해 지속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양형기준의 준수여부를 분석하는 장치가 필요함<sup>48)</sup>

## X. 각 국 양형기준제 장·단점 비교·분석 체크리스트

- 위와 같은 각국 양형기준제에 대하여 각 쟁점별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한 눈에 파악하여 볼 필요성이 있음
  - 아래 표<sup>49)</sup>의 평가 항목은 미국 법무부 사법지원국의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과 미국 모범 형법전(Model Penal Code) 등을 참조하여 작성해 보았음
-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이는 결국 각국의 양형기준제가 종합적 양형기준제인지, 단편적인 양형기준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되었음
- 핵심적 요소들로서는,
  - 양형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여부
  - 범죄 상호간의 범죄수준의 비교가 가능한가
  - 주요 양형인자의 계량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구금과 비구금(실형과 집행유예 내지 벌금) 선고기준의 명확한 제시 여부
  - 경합범 가중 방식의 존부
  - 과거 및 현재의 양형실태에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 양형기준 시행 후, 그 적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방안의 마련 여부 등임

48)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의 마련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28U.S.C.§994(w)]이나 각 주에서와 같이 판사들로 하여금 형 선고시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양형요소를 체크하고 이를 양형위원회에 송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입법예가 없는 양형자료분석관을 두어 이들을 한 두 명씩 각급 법원에 파견하여 재판 중인 사건 중 일부만을 관심 사건만을 등록하고 그 관심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만을 분석하여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결재를 받아 양형위원회에 보내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형기준 준수여부의 정도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상세한 내용은 박형관, 이주형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07 법조 6월호 26-27면, 51면 참조)

49) 구체적 내용은,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법조(2008. 4.) 314-373면

비교 요소 양형 기준 시행 국가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위(기준간 비교가능성)	양형기준의 효력	항소심 심사 여부	기준 이탈시 판결이유 기재여부	양형결정 의 투명성	지속적인 양형DB 구축 여부	예측 가능성
미국 연방	종합적	권고적 (Booker판결 이전에는 추정적)	○	○	가장 투명	○	○
영국 (England & Wales)	개별적 (매년 1~2 개)	권고적	×	○	불투명	×	×
미네소타	종합적 (중죄)	추정적	○	○	투명	○	○
버지니아	종합적 (15개 범죄유형)	권고적	○	○	투명	○	○
호주 (New South Wales/ Victoria)	표준 필수 복역 기간을 정하여 기준점 제시	표준 필수 복역기간은 추정적임	○	표준 필수 복역 기간 이탈시 이유 기재	△	○	△ (표준 필수 복역기간 이 정해진 범죄는 투명)

비교 요소 양형 기준 시행 국가	판결 자료 위원회 송부 여부	양형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스템	의회의 관여 정도	전과외 고려 방식	다수 범죄 처리 기준	범죄 수준의 상한/하한 범위	판사의 재량 범위	양형 기준 영향 분석 (교정자원 활용 가능성)
미국 연방	○	○	엄격하게 관여(승인, 지침)	체계적, 계량적 고려	○	좁음	가장 좁음	○
영국(England & Wales)	×	×	양형 기준 공포시 일부 관여	구체적 고려방식 없음	×	아주 넓음	매우 넓음	×
미네소타	○	○	상당하게 관여(승인)	체계적, 계량적 고려	×	중간	좁음	○
버지니아	○	○	상당하게 관여(승인)	체계적, 계량적 고려	○	중간	좁음	○
호주 (New South Wales/ Victoria)	×	×	×	×	○	× (표준 필수 복역 기간은 하한 존재)	넓은 편	×

## XI. 최초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의 범위(종합적 양형기준제 vs 점진적 양형기준제)

### 1. 종합적 양형기준제 vs 점진적 양형기준제 채택의 문제

-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망라적·종합적인 형태의 양형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점진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 **종합적 형태**의 양형기준제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망라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상당수의 주요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양형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형화된 기본범죄 수준을 제시하여 구금과 비구금 기준을 설정하는 구금선(dispositional line)을 그을 수 있고,
  - 하나의 양형테이블을 통한 경합범 처벌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용이하며
  - 교도소 수용인원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등 종합적인 양형정책의 시행도 가능해 짐
- 이에 반하여 개별적·서술식의 **점진적 형태**는 이러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구금/비구금(실형/집행유예) 기준을 정하거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
  - ※ 특히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하여도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경합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종합적 양형기준제가 도입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유형 내지 주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동시에 설정되어야 할 것임

## 2. 구체적 방안

- 법원조직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 양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범죄발생 빈도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실형 선고를 통해 교도소 인구증감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빈발하는 범죄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빈발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부패 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음
- 이러한 설정대상 범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소 비율 및 실형 선고 비율을 확인하여 교도소 수감인원에 영향을 줄 정도의 범죄를 일단 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

## XII. 신속한 양형조사자료 분석의 필요성

- 양형기준 설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망라적·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을 정립하려고 해도 최초 양형기준 설정시한이 2009년 4월 말이므로 현실적으로 망라적·격자형 양형기준의 설정이 어렵고 줄속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2009. 4.말경까지는 11개월 정도가 남았으므로,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일부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를 3개월이라도 파견받아서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분석하고 양형기준을 정한다면 망라적·종합적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제약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시행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음
- 또한 이번에 조사된 양형자료의 분석은 같은 전문위원이나 동일한 전문가에 의해 일관되게 분석되어야 하고, 모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신속한 양형분석을 위하여 양형위원회에 전문위원이나 일부 전문가를 파견받거나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신속한 양형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논의는 전문위원 차원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양형자료 분석방안 및 신속한 양형기준 초안 마련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최초 양형기준 시행전까지 모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양형기준을 제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식의 현실론이 개별적 양형기준제 방식의 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XIII . 결론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목적은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고, ‘법관들에게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그간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한 양형 편차’와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실형과 집행유예(구금/비구금) 선고 기준의 부재’, ‘온정적인 관대한 양형 경향’,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양형 기준제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양형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형태의 양형기준이어야 할 것임
- 국민들이 그간 느껴온 양형의 문제점들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충분히 계량화된 형태의 종합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임

[별지 1] 미국 연방 양형기준

범죄 등급	범죄 경력 범주						
	I (0, 1)	II (2, 3)	III (4, 5, 6)	IV (7, 8, 9)	V (10, 11, 12)	VI (13 이상)	
A 균	1	0-6	0-6	0-6	0-6	0-6	0-6
	2	0-6	0-6	0-6	0-6	0-6	1-7
	3	0-6	0-6	0-6	0-6	2-8	3-9
	4	0-6	0-6	0-6	2-8	4-10	6-12
	5	0-6	0-6	1-7	4-10	6-12	9-15
	6	0-6	1-7	2-8	6-12	9-15	12-18
	7	0-6	2-8	4-10	8-14	12-18	15-21
	8	0-6	4-10	6-12	10-16	15-21	18-24
B 균	9	4-10	6-12	8-14	12-18	18-24	21-27
	10	6-12	8-14	10-16	15-21	21-27	34-30
C 균	11	8-14	10-16	12-18	18-24	24-30	27-33
	12	10-16	12-18	15-21	21-27	27-33	30-37
D 균	13	12-18	15-21	18-24	24-30	30-37	33-41
	14	15-21	18-24	21-27	27-33	33-41	37-46
	15	18-24	21-27	24-30	30-37	37-46	41-51
	16	21-27	24-30	27-33	33-41	41-51	46-57
	17	24-30	27-33	30-37	37-46	46-57	51-63
	18	27-33	30-37	33-41	41-51	51-63	57-71
	19	30-37	33-41	37-46	46-57	57-71	63-78
	20	33-41	37-46	41-51	51-63	63-78	70-87
	21	37-46	41-51	46-57	57-71	70-87	77-96
	22	41-51	46-57	51-63	63-78	77-96	84-105
	23	46-57	51-63	57-71	70-87	84-105	92-115
	24	51-63	57-71	63-78	77-96	92-115	100-125
	25	57-71	63-78	70-87	84-105	100-125	110-137
	26	63-78	70-87	79-97	92-115	110-137	120-150
	27	70-87	78-97	87-108	100-125	120-150	130-162
	28	78-97	87-108	97-121	110-137	130-162	140-175
	29	87-108	97-121	108-135	121-151	140-175	151-188
	30	97-121	108-135	121-151	135-168	151-188	168-210
	31	108-135	121-151	135-168	151-188	168-210	188-235
	32	121-151	135-168	151-188	168-210	188-235	210-262
	33	135-168	151-18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34	151-18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262-327
	35	168-210	188-235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6	188-235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7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8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9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40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1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2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3	life	life	life	life	life	life



### Appendix A - MASTER GRID

June 14, 2004

		Criminal History Score				
Ranking Group Most Common Offenses		0 to 1/4 A	1/4 to 1/2 B	2 to 3/4 C	4 to 5/4 D	6 + E
3 Points*	<b>Group 1</b> 1st degree murder w/armed 1st degree murder	360 - 720	360 - 720	360 - 720	360 - 720	360 +
	<b>Group 2</b> 2nd degree murder w/armed 2nd degree murder 1st degree sex abuse 1st degree sex abuse w/armed	144 - 288	156 - 300	168 - 312	180 - 324	192 +
	<b>Group 3</b> Voluntary manslaughter w/armed 1st degree child sex abuse Carjacking while armed Assault with intent to kill w/armed Armed burglary I	90 - 180	102 - 192	114 - 204	126 - 216	138 +
	<b>Group 4</b> Aggravated assault w/armed Voluntary manslaughter	48 - 120	60 - 132	72 - 144	84 - 156	96 +
	<b>Group 5</b> Possession of firearm /CV Armed robbery Burglary I Obstruction of justice Assault with intent to kill	36 - 84	48 - 96	60 - 108	72 - 120	84 +
2 Points*	<b>Group 6</b> ADW Robbery Aggravated assault 2nd degree child sex abuse Assault with intent to rob	18 - 60	24 - 66	30 - 72	36 - 78	42 +
	<b>Group 7</b> Burglary II 3rd degree sex abuse Negligent homicide Assault w/ to commit mayhem Attempt 2nd degree sex abuse	12 - 36	18 - 42	24 - 48	30 - 54	36 +
1 Point*	<b>Group 8</b> CPWOL UUV Attempt robbery Attempt burglary 1st degree theft	6 - 24	10 - 28	14 - 32	18 - 36	22 +
	<b>Group 9</b> Escape/prison breach BRA Receiving stolen property Uttering Forgery RSP	1 - 12	3 - 16	5 - 20	7 - 24	9 +
*Criminal History Points for prior convictions in these groups.						
White/unshaded boxes – prison only.						
Dark shaded boxes – prison or short split permissible.						
Light shaded boxes – prisons, short split, or probation permissible.						

[별지 3] 노스캐롤라이나 주 양형기준표(중죄)

		I 0 Pts	II 1-4 Pts	III 5-8 Pts	IV 9-14 Pts	V 15-18 Pts	VI 19+ Pts	
<b>A</b>		<b>Death or Life Without Parole</b>						
<b>B1</b>	<b>A</b>	<b>A</b>	<b>A</b>	<b>A</b>	<b>A</b>	<b>A</b>	<b>A</b>	<b>DISPOSITION</b>
	240-300	288-360	336-420	384-480	<i>Life Without Parole</i>	<i>Life Without Parole</i>		<i>Aggravated Range</i>
	192-240	230-288	269-336	307-384	346-433	384-480		<b>PRESUMPTIVE RANGE</b>
	144-192	173-230	203-269	230-307	269-346	288-384		<i>Mitigated Range</i>
<b>B2</b>	<b>A</b>	<b>A</b>	<b>A</b>	<b>A</b>	<b>A</b>	<b>A</b>	<b>A</b>	
	157-196	189-237	220-276	251-313	282-358	313-392		
	125-157	151-189	176-220	201-251	225-282	251-313		
	94-125	114-151	132-176	151-201	169-225	188-251		
<b>C</b>	<b>A</b>	<b>A</b>	<b>A</b>	<b>A</b>	<b>A</b>	<b>A</b>	<b>A</b>	
	73-92	100-125	116-145	133-167	151-189	168-210		
	58-73	80-100	93-116	107-133	121-151	135-168		
	44-58	60-80	70-93	80-107	90-121	101-135		
<b>D</b>	<b>A</b>	<b>A</b>	<b>A</b>	<b>A</b>	<b>A</b>	<b>A</b>	<b>A</b>	
	64-80	77-93	103-129	117-146	133-167	146-183		
	51-64	61-77	82-103	94-117	107-133	117-146		
	38-51	46-61	61-82	71-94	80-107	88-117		
<b>E</b>	<b>I/A</b>	<b>I/A</b>	<b>A</b>	<b>A</b>	<b>A</b>	<b>A</b>	<b>A</b>	
	25-31	29-36	34-42	46-58	53-66	59-74		
	20-25	23-29	27-34	37-46	42-53	47-59		
	15-20	17-23	20-27	28-37	32-42	35-47		
<b>F</b>	<b>I/A</b>	<b>I/A</b>	<b>I/A</b>	<b>A</b>	<b>A</b>	<b>A</b>	<b>A</b>	
	16-20	19-24	21-26	25-31	34-42	39-49		
	13-16	15-19	17-21	20-25	27-34	31-39		
	10-13	11-15	13-17	15-20	20-27	23-31		
<b>G</b>	<b>I/A</b>	<b>I/A</b>	<b>I/A</b>	<b>I/A</b>	<b>A</b>	<b>A</b>	<b>A</b>	
	13-16	15-19	16-20	20-25	21-26	29-36		
	10-13	12-15	13-16	16-20	17-21	23-29		
	8-10	9-12	10-13	12-16	13-17	17-23		
<b>H</b>	<b>C/I/A</b>	<b>I/A</b>	<b>I/A</b>	<b>I/A</b>	<b>I/A</b>	<b>I/A</b>	<b>A</b>	
	6-8	8-10	10-12	11-14	13-19	20-25		
	5-6	6-8	8-10	9-11	12-15	16-20		
	4-5	4-6	6-8	7-9	9-12	12-16		
<b>I</b>	<b>C</b>	<b>C/I</b>	<b>I</b>	<b>I/A</b>	<b>I/A</b>	<b>I/A</b>	<b>I/A</b>	
	6-8	6-8	6-8	8-10	9-11	10-12		
	4-6	4-6	5-6	6-8	7-9	8-10		
	3-4	3-4	4-5	4-6	5-7	6-8		

[별지 4] 영국 양형위원회에서 공표한 “강도죄 양형기준” 중 일부 발췌  
 ‘노상 강도’ 또는 ‘강도목적 폭력행사(mugging)’, ‘소규모 상인에 대한 강도’, ‘보다  
 덜 계획적인 금품 강도’의 성인 범죄자  
 강도는 ‘2003년 형사사법법’ 제225조 내지 227조의 목표에 비추어 중대한 범죄임  
 (상한형: 무기징역)

행위의 태양/성격	기준점	선고 범위
범죄행위가 협박 또는 경미한 폭력의 행사 그리고 재물 강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12개월의 구금형	3년까지의 구금형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무기를 제시하여 사용하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시키는 물리력이 사용된 경우	4년의 구금형	2-7년의 구금형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가한 경우	8년의 구금형	7-12년의 구금형

추가 가중 인자	추가 감경 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인 이상의 공범인 경우</li> <li>2. 공범들 중에서 주모자인 경우</li> <li>3.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거나 추가로 피해자의 상황을 열악(additional degradation)하게 한 경우</li> <li>4. 범죄를 사전 기획한 경우</li> <li>5. 복면을 한 경우</li> <li>6.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해진 경우</li> <li>7. 연약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li> <li>8. 다액의 돈 또는 귀중품을 목표로 삼은 경우</li> <li>9. 사용되지 않았으나, 무기를 휴대한 경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발적 범행</li> <li>2. 가담정도 경미.</li> <li>3.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li> <li>4. 명백한 후회</li> <li>5. 경찰에 협력할 준비가 된 경우</li> </ol>

[별지 5] 영국 치안판사 양형기준 중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절 도	1968년 절도법 제1조 선택가능범죄 - 재판의 형태 참조 형벌 : 5급 벌금 및(또는) 6월 이하 징역 차량절도와 관련된 범죄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라(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포함)		②
단순석방 또는 벌금이 적절한가? <b>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큼 중한가? ☐ 양형기준에 해당</b> 실형이 적절한 만큼 중한가? 과형제한 범위내에 있는가?		③
이 양형기준표는 자백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경우에 적용됨		④
(+) 형벌 가중사유와 감경사유 및 각각의 비중 (-)		⑤
예) 고가품, 계획적, 지능적, 아동을 공범으로 사용한 경우, 집단적인 범죄, 범죄와 관련된 송상, 피해자의 상해(가중사유는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함)	예) 충동적, 저가품 (감경사유는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함)	⑥
○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사유가 가중요소가 되거나 보석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중함 ○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면 가중하여야 할 전과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가중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양형을 한 경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⑦
범죄의 중대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 피고인의 개별적 감경사유를 고려하라		⑧
예) 나이, 건강(육체적, 정신적) 경찰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 자발적으로 피해회복하였는지 여부		⑨
양형시 고려사항		⑩
○ 제시된 양형기준의 형벌과 선고하려는 형벌을 비교하여 다른 종류의 형벌이라면 그 이유를 신중히 재검토하라 ○ 자백한 시기에 따라 감형을 고려하라		⑪
형벌의 결정 배상명령 -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제시하라.		⑫

**[별지6] Standard non-parole periods**

1A	<i>Murder---where the victim was a police officer, emergency services worker, correctional officer, judicial officer, health worker, teacher, community worker, or other public official, exercising public or community functions and the offence arose because of the victim's occupation</i>	25 years (life)
1	<i>Murder---in other cases</i>	20 years (life)
2	<i>Section 26 of the Crimes Act 1900 (conspiracy to murder)</i>	10 years (25y)
3	<i>Sections 27, 28, 29 or 30 of the Crimes Act 1900 (attempt to murder)</i>	10 years (25y)
4	<i>Section 33 of the Crimes Act 1900 (wounding etc with intent to do bodily harm or resist arrest)</i>	7 years (25y)
5	<i>Section 60 (2) of the Crimes Act 1900 (assault of police officer occasioning bodily harm)</i>	3 years (7y)
6	<i>Section 60 (3) of the Crimes Act 1900 (wounding or inflicting grievous bodily harm on police officer)</i>	5 years (12y)
7	<i>Section 61I of the Crimes Act 1900 (sexual assault)</i>	7 years (14y)
8	<i>Section 61J of the Crimes Act 1900 (aggravated sexual assault)</i>	10 years (20y)
9	<i>Section 61JA of the Crimes Act 1900 (aggravated sexual assault in company)</i>	15 years (life)
9A	<i>Section 61M (1) of the Crimes Act 1900 (aggravated indecent assault)</i>	5 years (7y)
9B	<i>Section 61M (2) of the Crimes Act 1900 (aggravated indecent assault---child under 10)</i>	5 years (10y)

10	<i>Section 66A of the Crimes Act 1900 (sexual intercourse---child under 10)</i>	15 years (25y)
11	<i>Section 98 of the Crimes Act 1900 (robbery with arms etc and wounding)</i>	7 years (25y)
12	<i>Section 112 (2) of the Crimes Act 1900 (breaking etc into any house etc and committing serious indictable offence in circumstances of aggravation)</i>	5 years (20y)
13	<i>Section 112 (3) of the Crimes Act 1900 (breaking etc into any house etc and committing serious indictable offence in circumstances of special aggravation)</i>	7 years (25y)
14	<i>Section 154C (1) of the Crimes Act 1900 (car-jacking)</i>	3 years (10y)
15	<i>Section 154C (2) of the Crimes Act 1900 (car-jacking in circumstances of aggravation)</i>	5 years (14y)
15A	<i>Section 203E of the Crimes Act 1900 (bushfires)</i>	5 years (14y)
16	<i>Section 24 (2) of the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985 (manufacture or production of commercial quantity of prohibited drug), being an offence that: (a) does not relate to cannabis leaf, and (b) if a large commercial quantity is specified for the prohibited drug concerned under that Act, involves less than the large commercial quantity of that prohibited drug</i>	10 years (20y)

17	<p><i>Section 24 (2) of the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985 (manufacture or production of commercial quantity of prohibited drug), being an offence that:</i></p> <p><i>(a) does not relate to cannabis leaf, and</i></p> <p><i>(b) if a large commercial quantity is specified for the prohibited drug concerned under that Act, involves not less than the large commercial quantity of that prohibited drug</i></p>	15 years (life)
18	<p><i>Section 25 (2) of the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985 (supplying commercial quantity of prohibited drug), being an offence that:</i></p> <p><i>(a) does not relate to cannabis leaf, and</i></p> <p><i>(b) if a large commercial quantity is specified for the prohibited drug concerned under that Act, involves less than the large commercial quantity of that prohibited drug</i></p>	10 years (20y)
19	<p><i>Section 25 (2) of the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985 (supplying commercial quantity of prohibited drug), being an offence that:</i></p> <p><i>(a) does not relate to cannabis leaf, and</i></p> <p><i>(b) if a large commercial quantity is specified for the prohibited drug concerned under that Act, involves not less than the large commercial quantity of that prohibited drug</i></p>	15 years (life)
20	<p><i>Section 7 of the Firearms Act 1996 (unauthorised possession or use of firearms)</i></p>	3 years (14y or 5y)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이승환, “미국 일리노이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2003).

오기두, “미국의 형벌제도”, 저스티스 제82호(2004. 10.)

김희관, “미국 연방 양형기준법에 관한 고찰”, 해외 파견 검사 논문(제10집), 법무부(1994).

박홍우,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의 실제 적용방법”,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 행정처(2003).

박홍우, “미국 연방 및 주의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평가”,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발표자료(2005. 9. 29.)

박형관, “미국 주 양형기준제 개관 및 주요 쟁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12호(2008. 2.)

박형관,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특징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2호(2006. 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영국출장결과 보고, 국외 출장 결과 보고”, 2006.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반적인 원리, 중대한 정도, 판결선고 지침에 관한 위원회”, 영국의 양형제도 자료집.

손철우,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양형위원회 제6차 회의 자료집(2008. 3. 10.).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미 연방 양형위원회 15년 평가보고서”, 대검찰청 양형 기준태스크포스(번역본)

미네소타 양형위원회, “미네소타주 양형위원회 1980년 보고서”, 대검찰청 양형 기준 태스크포스(번역본)

경제개혁연대,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07-8호(2007. 8.)

설민수,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

이주형,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07.



8. 10.)

- 대검찰청 양형기준 태스크포스, '영·미 양형위원회 운용실태 보고'(2007. 6.)
- 이주형,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08. 2. 1.)
- 이주형, '호주의 양형기준제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07. 12. 10.)
- 김일수,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2000. 9. 5.)
-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7. 8. 10.)
- 한국형사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2006. 12. 4.)
- 오영근, 형법총론(2005)
- 배종대, 형법총론(2004)
- 김영환/최석윤,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 최석윤, '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토(통권 제29호,1997)

2. 외국문헌

- Micheal Tonry, "Punishment and Politics" William Publishing 2004
- Micheal Tonry & Kathleen Hatlestad, "Sentencing Reform In Overcrowded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Andrew Ashworth, "The Decline of English Sentencing and Other Stories", Sentencing and Sanction in Western Countries, 2001
- Frank O. Bowman, "The Failure of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 a Structural Analysis", Columbia Law Review.
- Richard S. Frase, "State Sentencing Guidelines: Diversity, Consensus and Unresolved Policy Issues", Columbia Law Review Vol 105(2005. 5.)
- Model Penal Code: Sentencing, Council Draft No1. The American Law

Institute(2006. 9. 27.)

New Zealand Law Commission, "Sentencing Guidelines and Parole Reform",  
Report94(2006. 8.)

U.S. Sentencing Commissio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2003

U.S. Sentencing Commission, The Fifteen Years of Guidelines on Sentencing 2004

Lord Justice Auld, "Review of the Criminal Courts of England and Wales", 2001

John Halliday, "making Punishment Work(Report of A Review of the  
Sentencing Framework for England)" Home Office(U.K.) 2001

Home Office, Justice For All, 2002

U.S. Sentencing Commission, "2006 Annual Report", 2006

The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Sentencing Tentative. Draft  
No.1(April 2007)

### 3. 인터넷 웹사이트 자료

미국연방양형위원회(U. S. Sentencing Commission), (<http://www.ussc.gov>)

미국 각 주 양형위원회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ussc.gov/states/nascaddr.htm>)

미법률가협회 홈페이지(<http://www.ali.org>)

영국 양형위원회(<http://www.sentencing-guidelines.gov.doc>)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www.pcj.go.kr](http://www.pcj.go.kr))

미국 법무부 사법보조국([www.ncjrs.gov](http://www.ncjrs.gov))

<http://correctionssentencing.blogspot.com/2007/03/history-of-wisconsin-sentencing-part-vi.html>

### 4. 기타 자료

법률신문 2007. 12. 3.자 1면, 4-5면

서울신문 2007. 8. 8.자

한겨레신문 2007. 8. 2.자 9면

부스앤뉴스 2006. 10. 19.자 제목 '중양은 경판이, 지역은 향판이 소송 싸늘이'

내일신문 2007. 6. 14. 21면